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재정 안정성 논의와 시사점
-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Ⅱ)

정책흐름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 외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C.O.N.T.E.N.T.S

권두칼럼	2	글로벌 경제와 강력한 정부 / 金仲秀
현안분석	6	재정 안정성 논의와 시사점 / 朴奇白
	21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 全瑛倭 · 白承勳
주요국의 조세제도	39	영국의 조세제도(II) / 金珍永
명언산책	45	소비와 명예
경제단상	46	사이버상의 신조어 열풍, 네티즌의 지정 노력 '질실' / 김택상
	48	영수증 좀 주세요! / 崔秉圭
인물탐험	50	허난설헌 / 李 濬
정책흐름	55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
	57	휘발유·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
	59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
	65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재정통계	70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92	유기체계 개편 서둘러야 외
한국조세연구원 소식	96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경제와 강력한 정부

金 仲 秀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장 (chskim@khu.ac.kr)

경 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IMF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자마자 경제위기가 재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들려온다.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 각 계층에 만연해 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우리는 무슨 개혁을 해 왔으며, 무엇에 대하여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로감은



일이 고될 경우 물론 느끼겠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할 때 더 느끼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 또는 실제로 개혁을 이끌어 갈 정부의 지도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 이것들이 피로감보다는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추진할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강력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정책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경제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의 구조조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위기극복 방안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하여 글로벌 경제에서는 경제위기가 더 빈번할 수 있다. 나스닥과 코스닥이 동조화

되고, 대기업에게는 해외시장이 국내시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실상이다. 민간 경제주체는 세계를 활동영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정부의 정책결정도 민간부문에 비견될 정도로 국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문제의 해결책과 전략의 수립은 바로 이 질문을 답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대외 개방되지 않은 부문의 상대적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부터 대외개방을 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개방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공부문의 본연적 특성상 전면적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와 정부 등 공공부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문제의 핵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경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과거의 기준에 의한 영역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구분, 그리고 학문간의 구분도 모호하여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고유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부문 중 상당부분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 부문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은 정부의 고유영역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경제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와의 구분도 애매해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추세는 강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의 일상화·보편화가 경제운영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경영학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도 예전에는 별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다. 아마도 국가 경제운영이 기업경영과 유사성을 갖게 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자본을 활용해야 하므로, 국제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시장에서 외면받는 경제가 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국제시장의 반응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정(補正)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재정·분배정책 등으로 시장에서의 낙오자를 보호해 주고,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교육·사회간접자본투자 정책을 주도하며, 국방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정부 고유의 기능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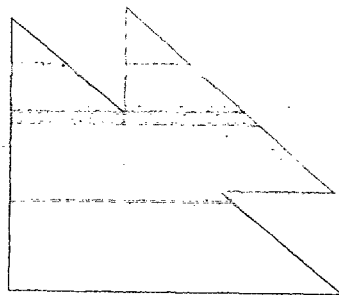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후로는 더욱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의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생성될 당시나 강조되었던 시장의 형성이 새삼스레 다시금 정부의 주요 역할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글로벌 추세에 기인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시장의 사회적·법적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정책적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이 아시아 경제위기의 요인이라는 IMF의 지적도 정부 역할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었던 빅딜정책도 시장형성 여부 논의에 관한 대표적 사례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교환을 시장 이외의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을 막론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도 동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과연 민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실패를 불러올 위험도 있다. 공적자금 운영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부의 실패를 예방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효율적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부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정부론에 너무 몰들어 있다. 작은 정부는 약한 정부가 될 것이고, 이는 경제에 큰 해는 끼치지 않겠지만 큰 득이 되는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추세는 강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제도와 정책을 새로운 국제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의 일상화·보편화가 경제운영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기존의 관료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적 감각과 전문적 소양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지향적 국수주의적 분위기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맞는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지도자들이 하루빨리 깨우치기를 기대해 본다. IMF

현안분석



1. 재정 안정성 논의와 시사점

朴奇白 연구위원

2.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全瑛俊 연구위원

白承勳 연구위원

재정 안정성 논의와 시사점



박 기 백 연구위원(kbpark@kipf.re.kr)

우리의 경우도 재정적자 및 부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재정적자의 원인과 향후 추세 및 대책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8년의 경우 통합재정적자가 GDP 대비 4%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통합재정적자가 GDP 대비 2.9%로 축소되었으나 아직 재정적자의 규모가 적지 않은 상태다. 정부부채도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2조원, 20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채권을 고려하면 정부부채의 증가 규모는 더 커진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부채의 범위와 규모, 향후 재정의 유지 가능성, 재정적자 감축방안 등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정적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캐나다가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우리의 논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당시 재정문제를 검토한 '재정관리 및 책임에 관한 왕립위원회'는 1979년 '신지출제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정부부채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급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정부부채의 급증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조직과 예산통제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는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재정적자 및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재정적자의 원인과 향후 추세 및 대책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재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재정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문제 해결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적자 또는 정부부채와 관련한 이론적 모형, 주요 쟁점, 재정의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재정에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현황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GDP 대비 -0.3%로 사실상 균형 상태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로 세입의 감소와 세출의 증가로 인하여 1998년에는 GDP 대비 -4.2%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GDP 대비 -2.9%로 재정적자가 다소 축소되었다. 올해 예산에 따르면 통합재정기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이지만 정부는 이를 2.9%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적자의 규모가 IMF의 권고수준인 GDP 대비 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표 1〉 재정수지(통합재정) 현황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GDP 대비 비율	-0.3	-1.65	-4.2	-2.9	-3.4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부채의 경우 1997년 말 65조 6천억원이었으나 1999년에는 108조 1천억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22.3%에 이르고 있다¹⁾. 중앙정부, 특히 일반회계와 공공기금의 채권발행 증가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주요 OECD 국가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의 비중이 낮아지거나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빠

주요 OECD 국가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1) 정부가 민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의미하는 정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는 범위, 계산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IMF 기준에 따른다.

최근 재정적자가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IMF의 권고수준인
GDP 대비 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낮지만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표 2〉 국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1997년 말	1998년 말	1999년 말
중앙정부 부채(①) (GDP 대비 비율)	50.5 (11.1)	71.4 (15.9)	90.1 (18.6)
• 중앙정부 예산	7.0	16.5	28.0
• 공공기금	28.2	36.1	43.2
• 공공차관	15.3	18.8	18.9
지방자치단체 부채(②)	15.1	16.2	18.0
일반정부 부채(①+②) (GDP 대비 비율)	65.6 (14.5)	87.6 (19.5)	108.1 (22.3)

자료: 기획예산처.

〈표 3〉 주요 국가의 부채(1998년 기준)

(단위: %)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OECD 평균
국가부채/GDP	97.3	66.5	63.1	56.7	69.5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999.6.

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III. 이론과 시사점

1. 정부부채 모형

먼저 정부부채에 대한 모형을 바탕으로 이의 시사점을 살펴보자. 정부부채는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이며 재정적자(정부부채의 증가)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세입을 초과한 세출(이자지급 제외)로 나타낼 수 있다.

$$dB / ds = iB + E - T^2 \quad (1)$$

2) 정부의 예산제약식(Debt Dynamics), Blanchard et al. (1990) 참조.

B는 부채, i는 이자율, E는 지출, T는 세입, s는 시간을 의미한다. 식 (1)은 재

정이 균형($db/ds = 0$)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전체지출이 세입과 같아야 한다($iB + E = T$)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의 균형과는 달리 재정의 안정은 보통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정부수입의 원천이 GDP이므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부채의 흐름을 GDP 대비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b/ds = (r-g)b + e - t \quad (2)$$

소문자는 GDP 대비 비율, r 은 실질이자율, g 는 실질성장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 안정($db/ds =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가 이자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한 값에 부채비율을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t - e = (r - g)b$).

식 (2)와 식 (1)의 주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식 (2)에서는 식 (1)과는 달리 이자율과 성장률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먼저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정부 부채가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한다³⁾. 이 경우 기존의 정부부채를 신규 정부부채로 상환(roll-over)하는 것(Ponzi Scheme)이 가능하며, 적자재정을 운용하여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과도한 자본축적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국채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재정수지의 흑자가 요구된다⁴⁾. 반면 이자율과 성장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초재정수지가 균형($t - e = 0$)을 이루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성장률과 이자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정안정은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하는 균형재정과는 달리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식 (2)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의 안정을 의미하는 재정안정은 균형 재정과는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달성이 가능하다.

3) 경제이론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의미하고, 실질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자본을 과다하게 축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가 비효율적(inefficient)이라고 한다. Elmendorf & Mankiw (1998), Abel, Mankiw, Summers and Zeckhauser (1989).

4) 최적 안정상태(Golden Rule Steady State)보다 낮은 자본축적 상태이므로 경제가 효율적(efficient)이라고 한다.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는
시사점은 경제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경우에만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적자의 효과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케인즈 모형(Keynesian)을 따라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고전학파의 모형을 따라 자본을 감축시킨다. 또한 정부부채는 자본을 1:1로 구축하며, 자본이 축소함에 따라 국민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부채로 인한 순소득 감소는 GDP의 약 3%(2,5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⁵⁾.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채로 인한 순소득 감소는 GDP의 약 3%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⁶⁾.

그러나 리카도 균형(Ricardian Equivalence)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재정적자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이론의 전제조건이 맞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며, 실증분석의 결과도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채는 이밖에 이자율 상승을 야기하고,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팽창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세금 인상을 통하여 부채를 상환할 경우 세율 변화에 따른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며, 부채 증가로 인한 국제적 신뢰 저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는 시사점은 경제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경우에만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재정적자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생하며, 일시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세입 증대로 해결하려 할 경우 세율 조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재정적자로 조정할 경우 재정적자의 장기적 효과가 주로 발생하여 인플레이션, 자본구축 등 부정적 측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적자의 원인이 일시적 요인인지 또는 구조적 요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출의 성격에 따른 구분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자본지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상지출, 특히 경상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제외한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감축하여 재정적자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⁸⁾. 또는 재정적자가 자본지출의 규모를 상회

5) 민간이 보유한 정부부채를 모두 자본으로 대체한 경우를 가정한다. Elmendorf & Mankiw(1998)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0.95, 감가상각률 0.35, 부채비율 0.5를 사용하여 추산한다.
6) 미국과 동일하게 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 0.095, 감가상각률로 0.035를 사용하고, 부채비율 0.22를 적용하면 약 1.5%의 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167(박종규, 1999)이라고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해당 수치가 0.095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의 감가상각률도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다.
7)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대외부채가 큰 경우 주로 발생한다.
8) Easterly(1999)는 경제적 성질이 아니라 지출 감축의 항구성을 바탕으로 정부소비지출의 감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 않도록 하지는 주장도 있다⁹⁾.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소비지출, 이전 지출, 자본지출(E_c , E_T , E_k 로 표기)의 축소(증가)가 세입(T)의 감소(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지출은 자본을 형성하고, 해당 자본으로부터의 수익이 세입이 되므로 일회적, 소모성 소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B / ds = iB + E_c + E_c + E_k - \theta K - T(E_c, E_T, E_k) \quad (3)$$

여기서 θ 는 자본수익률, K 는 자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요도로와 같은 자본 지출은 통행료 수입 등 직접적인 수입 증대효과(θK)가 있고, SOC와 같은 자본지출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정수입(T)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본지출도 금전적 수익률이 음수로 나타나고, 소득 증대효과가 여타 지출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소비, 이전지출보다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도로·지하철 건설, 공원 조성, 청사 구입 등은 운영·유지비용보다 금전적 수익이 적고, 외부효과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¹⁰⁾. 따라서 자본지출이라 하여도 외부효과 및 금전적 수입 증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측정 기준

정부부채와 관련하여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먼저 정부부채를 경상부채가 아닌 실질부채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거나 부채 규모가 많은 경우 실질부채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rac{d(B/P)}{ds} = \frac{dB/ds}{P} - \frac{dP/ds}{P} \frac{B}{P} \quad (4)$$

여기서 P 는 물가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면 경상으로 측정하는 문제가 사실상 해소되므로 실질부채를 측정하는 실익이 거의 없다.

정부부채를 액면가가 아닌 시장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자율이 오르면 정부부채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면가나 시장가치가 유

자본지출이
정부지출 축소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수익이 있거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외부효과가 커야 한다.

9) Golden Rule이라고 불린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지출의 감축보다는 소비지출의 감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종규(1999)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정부부채를 측정하는
한편 지급보증 규모,
연금재정, 정부 자산의
구성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장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실익이 적다. 자산과 채무를 포함하여 정부부채를 순채무 기준으로 측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처럼 정부자산과 채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 = B - K, \frac{dL}{ds} = iL + (E - T) + (r - \theta + \delta)K \quad (5)$$

여기서 L은 순채무, B는 포괄적 부채, δ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크거나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의 비중이 현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른 순채무 방식이 바람직하다¹¹⁾. 이러한 장 점에도 불구하고 순채무 방식은 자산과 채무를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국방관련 물적 자본의 가치 평가, 예금보험의 잠재적 채무의 크기 등 추정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처럼 부채 여부가 개념적으로 불분명한 부문도 존재한다. 보험료에 비교하여 과도한 연금혜택이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 연금납부자가 연금 각출료의 인상 또는 연금혜택의 축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연금의 향후 적자 가능성을 정부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연금납부자가 연금에 적자가 발생하여도 정부의 보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채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액보다 큰 연금혜택에 대하여 연금 납부자인 군인이 근무기간 동안의 낮은 급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당연히 일정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적자를 파생시키는 연금구조는 잠재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정부부채는 순채무 기준 또는 발생주의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개념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순채무 방식을 사용하여도 향후 대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 즉,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세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정부부채를 측정하여도 문제가 없다. 다만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보증, 연금재정, 정부 자산의 구성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에는 명시적 우발 채무(정부지급보증 등)와 묵시적(conjectural) 우발 채무(재난 보상 등)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연금은 채무의 수준이 연금구조, 인구구성 변화, 향후 경제 및 노동 상태 변화를 따르므로 우발채 무라 할 수 없다.

IV. 쟁점과 전망

1. 이자율과 성장률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소요되고, 이자율과 성장률의 격차가 6% 이상으로 확대되면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¹²⁾. 국채의 증가 등으로 이자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상이자율과 경상성장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자¹³⁾.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성장률이 이자율을 상회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이자율과 성장률의 격차를 일시적으로 확대시켰으나 1999년부터는 이자율과 성장률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자율과 성장률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그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하향 안정이나 고성장의 추구보다는 세입 증대 또는 지출 감축을 통하여 기초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자율과 성장률의 커다란 격차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자율과 성장률의 관리보다는 지출 감축 및 세입증대를 통하여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이자율과 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국채	26.9	15.9	14.2	15.0	13.6	12.8	12.3	12.2	14.8	16.0
성장률	25.4	14.9	17.3	14.3	11.4	16.7	17.2	18.8	12.2	20.6
차이	1.5	1.0	-3.1	0.7	2.2	-3.9	-4.9	-6.6	2.6	-4.6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국채	16.8	13.2	12.0	13.5	9.2	11.4	15.3	7.6	10.1	
성장률	21.1	13.5	12.9	16.5	16.7	10.9	8.3	-2.0	8.9	
차이	-4.3	-0.3	-0.9	-3.0	-7.5	0.5	7.0	9.6	1.2	

주: 1) 1987년까지는 장내 회사채 수익률(3년 만기), 1987년 이후는 국채 수익률(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2) 1999년도 성장률은 추정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0% 상회.

자료: 한국은행.

12) 전 주 성 · 황 진 우 (1999).

13) 본문의 논의는 실질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해당 수치에 물가상승을 더한 것이 경상이자율과 경상성장률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순채무를 정부부채로
계산하여도 정부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2. 순채무 방식의 시사점

다음으로 순채무 방식을 사용할 경우와 기존의 채무측정 방식을 사용할 경우의 차이점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제외하고, 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하는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채무는 포함시켜 순채무를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정

〈표 5〉 미 연방정부의 명시적 채무와 자산

	구분	가치(1995년, 10억 달러)
채무	부채 (중앙은행 제외)	3,219
	연방 연금(군인, 공무원) 채무	1,513
	보험(예금보험 등) 채무	66
	기타(지급보증 등)	498
자산	금융자산(금, 용자금)	576
	실물자산(기계, 부동산 등)	1,737
순채무		2,983

자료: OMB

〈표 6〉 우리나라의 채무와 자산의 현황

	구분	가치(1998년, 조원)
채무	부채 (중앙 및 지방정부)	108.1(1998년말)
	지급보증	16.4~24.5 ¹⁾
	군인, 공무원 연금 채무	불명
	보험(예금보험 등) 채무	불명
자산 ²⁾	금융채권: 용자금	112.4 (1998년말 + 1999년 순용자)
	예금 및 예탁금	9.6 (1998년말)
	국유재산	150.4 (1998년말 기준) ³⁾

주: 1) 지급보증의 규모는 81.8조원('98년말)임. 금융구조조정에 지급보증된 채권의 회수 불능 규모는 11.8조원(강석훈), 32~40조원(전주성·황진우) 등 다양한 추정치를 보임.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보아 20~30%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함.

2)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조세채권 6.7조원(1998년말 기준)은 제외함.

3) 토지, 건물, 선박 및 항공기, 기계기구, 유가증권(36.5조원), 무형재산(2,065억원) 포함, 도로·항만·하천 등 공공자산 제외한 수치.

부부채를 측정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존의 채무 측정방식보다 정부부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처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순채무를 살펴보자¹⁴⁾. 우리나라의 경우 용자금, 유가증권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고, 여타 자산도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연금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지만 이를 감안하여도 순채무는 미국의 경우처럼 부채 규모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98년도의 순채무 변화를 보면 채무는 국채 18조 1천억원, 차입금 3조 3천억원 등 약 21조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자산은 전대, 용자금 등 금융채권이 19조 7천억원 증가하고, 국유재산이 10조 7천억원 증가(정부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이 6조 9천억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의 경우도 순채무는 감소한 것이 된다. 다만 정부보증채무가 58조 9천억원 증가하였으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정부 보증채무의 손실 규모에 따라 1998년도의 순채무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채무가 일회성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순채무가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재정 취약성 지표와 시사점¹⁵⁾

초기 재정상황(initial fiscal position)에 대한 지표로는 GDP 대비 재정수지, 순금융부채(net financial debt) 등이 있다. 먼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998년 -4.2%, 1999년 -2.9%, 2000년 -3.4로 높은 수준이다¹⁷⁾. 또한 통합재정세입 대비 우발채무의 비율도 0.85에 달한다¹⁸⁾. 따라서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의 개선과 우발채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에 대한 단기지표로는 거시지표에 대한 재정수지의 민감성, 수입과 지출의 변동 가능성, 순우발채무 등이 있다. 보통 GDP 성장률, 경상수지, 환율, 이자율 등 거시변수에 대한 재정수지의 민감도가 높으면 재정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의 탄성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세출은 경기와 동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⁹⁾.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출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일시적 경기 악화가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기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가 작아 외국

14) 국민연금은 2000년 예산 기준으로 조성규모가 56조원이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는 연금 보험료 납부총액 현재가치(PV) - 연금 급여총액 현재가치(PV)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잠재적 채무가 186조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연금가입자 740만명, 연금 지급기간 15년(61세~75세), 임금상승률 3.5~5.5%, 이자율 4.0~6.0% 등 전제). 이러한 채무는 향후 연금구조(각 출료와 연금혜택)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명시적 채무로는 볼 수 없다. 반면 지급보증의 경우 현재 그 규모가 확정(명시적인 채무)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15) 단일 지표보다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재정지표를 바탕으로 재정의 취약성을 살펴 보았다. Hemming & Petrie (2000).

16)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외 활동(특별회계 및 기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준재정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부채와 자산의 변화, 우발채무도 고려되어야 한다.

17) 전대차관을 제외하는 경우 1998년 -3.2%, 1999년 -2.9%, 2000년 목표 -2.9%를 감안하여도 IMF에서 권고하는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18) 보증채무(81.8조원), 통합재정세입(96.7조원)

재정에 대한 단기지표로는 거시지표에 대한 재정수지의 민감성, 수입과 지출의 변동 가능성, 순우발채무 등이 있다.

에 비해 재정수지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약하다는 증거이므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등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자본지출, 순유자 등의 경기동행적 성격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가능(sustainability)한가에 대한 지표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및 기초재정수지 비율의 추세나 국가 신용등급 등이 있다¹⁹⁾. 먼저 향후 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세입의 경우 소득·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증대 가능성이 높다. 소득·법인세의 경우 1999년의 수입은 1997년 대비 3.8%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도의 기업 실적이 양호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 증대가 예상되므로 2000년도부터는 세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도의 조세부담률이 18.7%로 1996년도의 1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경제성장률보다 세입의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도 1999년 수입이 1997년 대비 40.5% 증가하였고 향후의 고용,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도 예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입은 부담금이 9조 1천억원, 운용수입이 4조 2천억원인 반면 지출은 3조 5천억원으로 9조 8천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대

〈표 7〉 조세부담률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예산)	2000(예산)
조세	19.9	19.1	19.7	19.5	18.9	18.3	18.7
국세	15.6	15.0	15.5	15.4	15.1	14.7	15.2

〈표 8〉 중기재정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이자비용(조원, 잠정)	8.5	9.6	9.8	9.5	8.1
통합재정수지/GDP(%)	-3.4	-2.8	-1.6	-0.5	0.5

자료: 이자비용은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1999년 10월 자료
통합재정수지는 기획예산처.

19) 고영선(2000) 참조. 세출 탄성치는 우리나라 0.796, OECD 국가는 -0.061, 세입 탄성치는 우리나라 0.985, OECD 국가 1.05이다.

20) 인구고령화, 학생 수 변화 등 인구구성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표 9〉 최근 세입과 세출의 항목별 추이

(단위: 십억원, %)

	1997	1998	1999	증가율(99/97)
통합재정수입	93,368	96,673	107,996	15.7
경상수입	92,073	95,790	106,513	15.7
국세수입	69,928	67,798	75,657	8.2
소득세 및 법인세	24,292	27,975	25,220	3.8
재산세	1,590	1,379	3,272	105.8
재화 및 용역세	30,650	27,159	33,607	9.6
관세	5,798	3,836	4,689	-19.1
기타	7,598	7,449	8,871	16.8
사회보장 기여금	8,506	10,512	11,954	40.5
세외수입	13,639	17,480	18,902	38.6
자본수입	1,295	883	1,483	14.5
지출 및 순융자	93,252	115,430	121,797	30.6
지출	81,604	90,990	101,895	24.9
경상지출	62,813	70,631	77,314	23.1
재화 및 용역	21,147	21,697	20,083	-5.0
이자지급	2,258	3,399	5,785	156.2
보조금 및 경상이전	38,492	44,430	49,637	29.0
보조금	561	576	889	58.5
지방정부 경상이전	22,970	24,934	25,639	11.6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7,238	8,943	12,173	68.2
가계 경상이전	7,396	9,549	11,011	48.9
해외 경상이전	327	428	379	15.9
비금융공기업 경상지출	916	1,105	1,809	97.5
자본지출	18,791	20,359	24,581	30.8
고정자산 취득	6,419	6,388	10,634	65.7
재고자산 매입	301	331	350	16.3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1,547	1,349	1,533	-0.9
비금융공기업 자본지출	1,684	1,890	1,084	-35.6
자본이전	8,840	10,401	10,980	24.2
순융자	11,648	24,440	19,902	70.9
통합재정수지	116	-18,757	-13,801	
기초재정수지	2,374	-15,358	-8,016	
경상 GDP	453,276	444,367	483,778	

재정 현황에 따른
지표는 불안하지만
중장기 지표는
재정의 안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1997년도가 재정 균형이므로 1997년도를 기준으로 함.
1999년 GDP는 잠정치.

**재정적자 급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세입의
감소는 향후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출도 급등 요인이 없다.**

규모 확대가 당분간 재정적자의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²¹⁾.
 다음으로 지출을 살펴보자. 먼저 금융구조조정비용은 이자비용이므로 기초재정수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성격이 일회성 지출이므로 지속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실업대책비 또한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확대에 대한 경상이전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급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세입의 감소는 향후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출도 급등 요인이 없다. 따라서 경제가 급속한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는 이상 통합재정수지의 균형, 즉 균형재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도 재정의 안정성 확보, 즉 기초재정수지의 균형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신용등급인 국채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0〉 신용등급(S&P 기준)

	1997. 10.	11.25	12.11	12.23	1998.2.17	1999.1.15	11.11
외환표시 국채	A+	A-	BBB-	B+	BB+	BBB-	BBB
원화표시 국채	AA	A+	A-	BBB-	BBB+	A-	A

자료: 재정경제부

V. 결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재정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재정적자나 부채를 회피하고, 재정이 국내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적시에 적합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변동(Business Cycle), 조세평준화를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21) 미국의 경우도 최근의 재정흑자는 대부분 사회보장세 수입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경제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한 이상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재정관련 지표에 따르면 현재의 재정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인 지출 증가 및 세입 감소가 주로 한시적인 것이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화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재정수지의 균형을 단기에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재정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에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가져가려면 급격한 지출 감축, 세율 인상 등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률보다 낮은 지출 증가율 등 준칙에 따른 지출 통제를 통하여 재정의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²⁾.

또한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출 통제 및 세입 확충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자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 1999년의 자본지출은 1997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경기 호조를 감안할 때 지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1997년에 비해 지출 규모가 감소한 인건비나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라 증가할 이전지출은 지출 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나 금전적 수입 증가와 관련이 적은 자본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소비지출의 비중을 감축하고, 연금제도의 개혁 등이 요구된다. Easterly(1999)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건비 등 정부소비의 감축이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감축할 경우 궁극적인 지출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분간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전에 연금구조를 개혁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성장률과 이자율간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재정·금융정책을 유지하고, 지급보증채무, 융자 등 채권 및 채무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에 대한 앞의 논의가 성장률과 이자율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수지 외에 정부 순채무의 변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안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자본지출 및 용자의
축소를, 장기적으로는
정부 소비지출 및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 미국이 재정수지를 지표로 삼았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지출에 대한 통제로 선회하였다.

참고문헌

- 강석훈,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 금융구조조정을 중심으로」,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 고영선, 「조세행정의 재량성에 관한 경험적 근거」,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2000.
- 기획예산처, 「국가채권관리방안」, 1999. 10.
- 박종규,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방안」, 연구보고서 99-05,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 전주성·황진우, 「경제위기 이후 재정기조와 국가부채: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비용을 중심으로」,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 Abel, Mankiw, Summers and Zeckhauser, "Assessing Dynamic Efficiency: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6, 1989, pp. 1~20.
- Alesina, Alberto and Roberto Perotti, "Fiscal Expansions and Adjustments in OECD Countries," *Economic Policy*, October 1995, pp. 207~248.
- Auerbach, Alan J. and Kevin A. Hassett, "Uncertainty and The Design of Long-Run Fiscal Policy," NBER working paper 7036, NBER, March 1999.
- Blanchard, Oliver, Jean-Claude Chouraqui, Robert P. Hagemann and Nicola Sarto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New Answers to An Old Question," *OECD Economic Studies*, No.15, Autumn 1990.
- Buiter, Willem H., "Notes on 'A Code For Fiscal Stability'," NBER WP6522, April 1998.
- Easterly, William, "When Is Fiscal Adjustment an Illusion?," *Economic Policy*, No. 28, 1999, pp. 55~76.
- Elmendorf, Douglas W. and N. Gregory Mankiw, "Government Debt," NBER WP 6470, March 1998a.
- Hemming, Richard and Murray Petrie, "A Framework for Assessing Fiscal Vulnerability," IMF WP/00/52, March 2000.
-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 6.
- OMB,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1996.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全 瑛 俊 연구위원(chun@kipf.re.kr)

白 承 勳 연구원(lifeislife@kipf.re.kr)

1.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지출 수준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계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의 복지국가 모형(the welfare state)이 사실상 실패로 인식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경제적 격차, 인구특성(demographics)상 차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구조상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한 국제비교에 따른 재정확충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의료보험급여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성상 급여지출 규모가 현재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향후 공적부조 예산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한 사회보장 예산규모를 추계하여 주요국의 사회보장 예산규모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간 차이(특히, 인구구조와 빈곤도의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각국의 사회보장 예산규모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격차,
인구특성상 차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구조상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한
국제비교에 따른
재정확충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을 혼합한 방식으로
사회보장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II. 주요국의 사회보장예산

1. 사회보장의 분류방식

사회보장은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이나 사고의 내용,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운영방식 등 여러 방식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이나 사고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노령·장애·유족급여(Old age, Invalidity, Survivor's benefit), 질병·출산급여(Sickness, Maternity benefit), 노동재해급여(Work injury benefit),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가족급여(Family benefit) 등이 있으며 사회보장이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현금급여(Cash benefit), 서비스급여(Service benefit: 상담·입원(Hospitalization), 치료(Medical care), 재활(Rehabilitation)),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in kind benefit)로 분류하며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일반재정에 의한 급여(benefits financed by general revenue), 가족급여(family benefits), 준비기금(provident funds), 고용주부담(provision made by employers),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화시키면 사회보장운영을 사회보험¹⁾, 사회부조²⁾, 수당³⁾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분류방식과 단순화된 세 번째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분류한 주요국의 사회보장예산 운용방식을 살펴보면 노령·폐질·유족급여는 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용되거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혼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질병·출산의 경우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보험/수당 혼합방식이 많고 노동재해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실업급여는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보험/사회부조 혼합방식이 많다. 그리고 가족급여의 경우는 사회부조/수당 혼합방식이 많다(〈표 1〉 참조).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 1〉의 내용과 ILO database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예산을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으로 분류하고 사회보험은 위험대상에 따라 ① 노령·폐질·유족(공적연금) ② 질병·출산(의료보험) ③ 노동재해(산재보험) ④ 실업급여(고용보험)로 분류하여 각 부문의 예산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사회보장 예산 중 사회보험의 비중을 과대 평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 1) 가입자가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contributory and non-means tested)
- 2) 일반재정에서 재원이 조달되고 수급시에는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non-contributory and means tested)
- 3) 일반재정에서 재원이 조달되고 수급시에도 자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non-contributory and non-means tested)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을 다시 기여분(contributory)과 비기여분(non-contributory)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⁴⁾

분석대상이 된 모든 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의 총규모는 GDP대비 15%를 상회하고 있다.

〈표 1〉 OECD국가의 급여별 사회보장방식 유형

국 가	노령·폐질·유족	질병·출산	노동재해	실업급여	가족급여
오스트레일리아	A	A/I	I	A	D/A
오스트리아	I	I	I	I	I/D
벨기에	I	I	I	I	I/A
캐나다	D/I	I/D	I	I	D
덴마크	D/A/I	D	D	I	D
핀란드	I	I	I	I/A	D
프랑스	I/A	I	I	I/A	I/A
독일	I	I	I	I/A	D
아일랜드	I/A	I/A	I	I/A	D/A
이탈리아	I/A	I/D	I	I	I
일본	I	I	I	I	A
룩셈부르크	I	I	I	I	I/D
네덜란드	I	I	*	I/A	D
뉴질랜드	D/A	A/D	I	A	D/A
노르웨이	D/I/A	I/D	I	I	D
스페인	I	I	I	I	I/A
스웨덴	D/I/A	I/D	I	I/D	D
영국	I/A	I/D	I/A	I/A	D
미국	I/A	-	I	I	-

주: 1. 네덜란드는 1967년 이후 노동재해급여를 질병·장애급여에 포함 운영하고 있음.

2. A: 사회부조, I: 사회보험, D: 수당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OECD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사회부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96-01, 1996.

4) 그러나 퇴역군인을 위한 공적연금급여와 무각출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비기여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비중을 과대평가할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5) 사회보장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부록 1〉 참조. 이 자료는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Fourteenth International Inquiry* 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국가는 199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2. 주요국의 사회보장예산

본고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의 사회보장예산의 규모를 조사하였다⁵⁾. 〈표 2〉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이 된 모든 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의 총규모는 GDP대비 15%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GDP 대비 15~20%인 북미

**사회보장예산 중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일본보다 유럽국가들(20~30%)의 경우가 더 높으며,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덴마크의 경우는 GDP의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예산 중 사회보험의 비중이 사회부조와 수당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보험 중에서도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급여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되고 의료비 지출의 규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연금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노인인구부양비⁶⁾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보험의 비중은 국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공적)의료보험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럽국가들 공적의료보험의 역할이 큰 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⁷⁾

한편 대부분의 조사대상국에 있어 무각출 공적연금과 무각출 의료보험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각출 공적연금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나라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으며⁸⁾ 무각출 의료보험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핀란드와 덴마크가 있다.⁹⁾ 또한 고용보험 부문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독일,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등이 고용보험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GDP 대비 1%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공적부조(무각출 사회보험+공적부조+수당)의 비중에 있어서는 미국(4.55%), 영국(7.08%), 스웨덴(5.75%), 캐나다(8.2%), 핀란드(12.17%) 그리고 덴마크(16.98%)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⁰⁾ 독일,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비교적 비중이 낮은 나라들이며 대체적인 수준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나 있는 국가별 (상대적) 빈곤도와 비교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공적부조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높은 빈곤도에서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상대적 빈곤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에 대한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향후 이들 나라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 인구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1995년 8.3%)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7) 미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유럽에 비하여 낮은 원인의 상당부분이 공적 의료보험지출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8) 국민연금 중 균등분(기초연금)을 일반재정에서 조달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 결과의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 9) 무각출 의료보험의 경우도 〈표 1〉에서 나타난 급여별 사회보장운영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10) 이들 국가들의 공적부조+수당의 비중은 미국 4.55%, 영국 6.80%, 스웨덴 5.75%, 캐나다 5.15%, 핀란드 6.14% 그리고 덴마크 10.65%이다.

〈표 2〉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액 비교

(단위: 백만US\$, %)

				미국(1991)		독일(1993)		영국(1993)		일본(1993)		프랑스(1990)		
				A	B	A	B	A	B	A	B	A	B	
사회 보험	공적 연금	국민 연금	contribution	276,244	4.92	0	0.00	55,309	5.76	90,753	2.12	48,545	4.06	
			non-contribution	0	0.00	0	0.00	0	0.00	0	0.00			
		직역 연금	contribution	134,408	2.40	223,105	11.67	19,716	2.05	348,565	8.13	120,973	10.13	
			non-contribution	0	0.00	16,459	0.87	1,685	0.18	16,275	0.38	0	0.00	
	의료보험	공공보험	contribution	116,663	2.08	128,251	6.71	58,520	6.09	239,914	5.60	83,636	7.00	
			non-contribution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고용보험	contribution	28,455	0.50	65,049	3.40	2,445	0.25	19,788	0.46			
			non-contribution	0	0.00	13,522	0.71	0	0.00	0	0.00			
	산재보험	contribution	41,654	0.74	11,427	0.60	-	-	10,744	0.25				
		non-contribution	0	0.00	0	0.00	-	-	0	0.00				
	소 계				597,424	10.64	457,813	23.96	137,675	14.33	726,039	16.94	253,154	21.19
	공적부조				255,732	4.55	32,142	1.68	54,631	5.69	38,106	0.89	35,208	2.95
수 당				0	0.00	13,119	0.69	11,622	1.21	2,007	0.05	0	0	
광의의 공적부조(무각출 사회보험+공적부조+수당)					4.55		3.95		7.08		1.32	0	2.95	
총 계				853,156	15.19	503,074	26.33	203,928	21.23	766,152	17.88	288,362	24	

〈표 2〉 의 계속

(단위: 백만US\$, %)

				스웨덴(1991)		캐나다(1993)		오스트리아(1993)		핀란드(1993)		덴마크(1990)		
				A	B	A	B	A	B	A	B	A	B	
사회 보험	공적 연금	국민 연금	contribution	36,021.4	18.77	17,719.4	3.25	19,999.3	11.00	15,842	18.84	8,401.2	6.24	
			non-contribution	0	0.00	16,581.4	2.99	0	0.00	284	0.34	3,308.8	2.46	
		직역 연금	contribution	0	0.00	0	0.00	7,845.1	4.30	0	0.00	1,617.8	1.20	
			non-contribution	9.3	0.00	353.1	0.06	598.7	0.30	604	0.72	107.1	0.08	
	의료보험	공공보험	contribution	19,196.2	10.36	42,640.6	7.80	8,028.1	4.40	2,264	2.69	3,126.3	2.32	
			non-contribution	0	0.00	0	0.00	0	0.00	4,148	4.97	5,153.3	3.83	
		고용보험	contribution	5,459.8	2.95	15,028.5	2.52	3,318.6	1.80	3,724	4.43	6,113.3	4.54	
			non-contribution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산재보험	contribution	1502	0.81	4,624.3	0.85	1,021	0.60	390	0.46	324.6	0.24		
		non-contribution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소 계				62,188.7	32.89	96,947.3	17.47	40,810.8	22.40	27,256	32.45	28,152.4	20.91
	공적부조				1,150.9	0.62	18,674.8	3.42	1,592.8	0.80	4,199	4.99	12,924.2	9.60
수 당				9,506.8	5.13	9,416.9	1.73	4,296.5	2.40	970	1.15	1,359.8	1.01	
광의의 공적부조(무각출 사회보험+공적부조+수당)					5.75		8.2		3.5		12.17	0	16.98	
Central Administration				1,366.4	0.74					313	0.37	790.9	0.59	
총 계				72,846.4	38.64	125,039	22.62	46,700.1	25.60	32,738	38.96	43,227.3	32.11	

주: 1. A는 총지출, B=(A/해당국의 GDP)×100을 나타냄.

2. 영국의 산재보험 지출액은 공적부조의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음.

3.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성격에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contribution이 있음에 주의할 것.

4. Central Administration 항목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별도의 항목을 두어 계산하였음.

자료: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Fourteenth International Inquiry* 를 재구성하였음. 이에 대한 자료는 <http://www.ilo.org/public/english/110secso/css/cssindex.htm>에 있음.

〈표 3〉 노령인구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1960~2030년)

(단위: %)

	1960	1990	2000	2010	2020	2030
미 국	15.4	19.1	19.0	20.4	27.6	36.8
일 본	9.5	17.1	24.3	33.0	43.0	44.5
독 일	16.0	21.7	23.8	30.3	35.4	49.2
프 랑스	18.8	20.8	23.6	24.6	32.3	39.1
이탈리아	13.3	21.6	26.5	31.2	37.5	48.3
영 국	17.9	24.0	24.4	25.8	31.2	38.7
캐 나 다	13.0	16.7	18.2	20.4	28.4	39.1
호 주	13.9	16.0	16.7	18.6	25.1	33.0
오스트리아	18.6	22.4	23.3	27.7	32.6	44.0
벨기에	18.5	22.4	25.1	25.6	31.9	41.1
체코	11.9	19.1	19.9	22.1	31.6	-
덴마크	16.5	22.7	21.6	24.9	31.7	37.7
핀란드	11.7	19.7	21.5	24.3	34.7	41.1
그리스	12.3	21.2	25.5	28.8	33.3	40.9
아이슬란드	14.1	16.6	17.3	18.1	24.1	32.1
아일랜드	18.6	18.4	16.7	18.0	21.7	25.3
룩셈부르크	15.9	19.9	21.9	25.9	33.2	44.2
멕시코	-	6.4	7.0	8.0	10.4	14.8
네덜란드	14.7	19.1	20.8	24.2	33.9	45.1
뉴질랜드	-	16.7	17.1	18.9	24.6	30.5
노르웨이	17.3	25.2	23.9	24.0	31.2	38.7
포르투갈	12.7	19.5	20.9	22.0	25.3	33.5
스페인	12.7	19.8	23.5	25.9	30.7	41.0
스웨덴	17.8	27.6	26.9	29.1	35.6	39.4
스위스	15.5	22.0	23.6	29.4	37.8	48.6
터키	6.7	7.1	8.9	9.4	11.7	16.2
OECD 전체(체코 제외)	14.9	19.3	20.9	23.5	29.8	37.7
OECD(유럽)	15.3	20.6	22.1	24.7	30.8	39.2

자료: E., Bos, M.T. Vu, E. Massiah, and R. Bulatao (1994),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1994-95*, The International Bank of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Czech Republic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Family, Market and Community Equity and Efficiency in Social Policy*, 1997.

〈표 4〉 국가별(상대적) 빈곤도

	평균소득 50% 이하 소득자 비중 기준		중간소득의 50% 이하 소득자 비중 기준	
	비중	국가 서열	비중	국가 서열
호주(1985)	15.7	2	12.6	2
벨기에(1985)	5.8	10	4.8	10
캐나다(1987)	13.8	3	12.1	3
핀란드(1987)	5.5	11	6.9	8
프랑스(1984)	11.9	5	7.3	7
독일(1983)	8.0	7	6.9	9
네덜란드(1987)	8.3	6	3.0	11
노르웨이(1986)	6.4	8	7.8	6
스웨덴(1987)	6.3	9	8.1	5
영국(1986)	13.0	4	8.4	4
미국(1986)	22.6	1	17.7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규모는
표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 OECD, *Family, Market and Community Equity and Efficiency in Social Policy*, 1997.

I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 구조

우리나라 (기능별) 예산분류상 사회보장지출로 분류된 항목과 4대 사회보험급
여지출 총액을 집계하여 보면, 우리나라 총 사회보장지출액의 규모는 1997년,
1998년 각각 GDP의 2.84%, 3.54%에 이르고 있으며¹¹⁾ 각 연도의 사회보험 총
급여액은 각각 GDP의 1.91%, 2.52%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0.33%, 0.54%, 의
료보험의 경우 1.22%, 1.46%를 차지하고 있다(〈표 5〉와 〈표 6〉 참조). 또한
GDP 대비 공적부조 규모는 1997년 0.69%, 1998년 0.77%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0.9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¹²⁾.

상기의 통계(추정)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규모는 표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를
산출할 경우 향후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첫째,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본격적인 연금급여지급이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완전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조기노령연금 및 감
액노령연금이 2000년부터 지급되는 한편 1999년부터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되

- 11)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액 수준이 1998년도에 급
격히 상승한 원인은 국민
연금급여의 증가에도 기
인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GDP 수준의 하락에서도
찾을 수 있다.
- 12) 예산상의 사회보장지출액
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지출은 제외하였다.
공적부조예산에 1998년
부터 급격히 증가한 실업
대책관련예산은 포함시키
지 않았다(1998년 GDP
대비 1.3%, 1999년
1.6% 추정). 실업예산은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주요 외
국의 공적부조 예산에 실
업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의 규모는
노령화 진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있으므로 연금급여지출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각종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급여도 향후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의료보험급여지출도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할 전망이며, 현재의 진료수가체계로는 의료보험재정을 유지할 수 없어 가까운 장래에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여 의료보험급여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넷째, 고용보험의 경우 1998년에 적용자가 확대되었고 향후 실업률이 과거 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급여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주요 외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문제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예산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과 인구의 고령화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총지출에 대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추계치를 이용하였다(추계시 사용한 기본 가정은 <부록 2>¹³⁾ 참조). 그리고 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의 지출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추계를 이용하고 사학연금의 경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를 이용하였으며 군인연금의 향후 급여수준은 공무원연금의 20%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정하였다(『예산개요참고자료』,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참조). 또한 의료보험 지출규모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장래 인구구조 변동추이와 1인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실질경제성장률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하였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발생률이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례하고 피급여자 1인당 지출액이 실질경제성장률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그 규모가 산출되었고 고용보험의 총지출액은 GDP 대비 급여액 비중이 1998년도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GDP 대비 공적부조의 규모는 1999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가정하에서 향후 30년간의 사회보장예산 추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예산의 총규모는 향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2020년 사이에 GDP 대비 10%를 상회하여 2030년경에는 그 비율이 약 20%에 이르게 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사회보험 특히, 공적연금의 지출증가에 주로 기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GDP 대비 총지출은 2015년에 3.93%, 2020년에 6.25% 그리고 2030년에 11.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13) (부록 2)에 제시된 기본 가정들은 1997년도 말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못하였고 1999년 4월 도 시지역 확대적용자의 평균신고소득이 사업장가입자의 약 60%(재정추계 기본가정에서는 80%)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지출액을 다소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되며 직역연금의 경우 동일 연도에서의 비율이 2.12%, 2.89% 그리고 4.2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적연금 전체의 GDP 대비 총지출 수준은 2030년에 약 1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보험 지출액 추계시, 인구구조변동에 의한 지출변동치만 감안하였기 때문에 향후의 진료수가 상승효과를 감안할 경우 사회보험의 전체 지출수준이 2030년경에는 2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부조의 수준은 재정 추계시 1999년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국의 사회보장예산 구조는 1990년대 중반 현재의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황비교는 노년 인구부양비가 거의 비슷한 2025년경을 기점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표 3〉, 〈부표 2〉 참고). 즉 〈표 7〉에 제시된 2025년경 우리나라 사회보장 규모는 약 17.09%이지만 진료수가 상승에 의한 의료보험 지출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18%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17%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의 규모는 노령화 진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사회보험 수준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의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공적부조예산 수요증가를 약 60% 정도¹⁴⁾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1.6~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적부조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년 10월부터)된 후에는 공적부조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연간 8,000억 ~ 1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 재정추계는 1999년 생활보호관련예산이 1조 8,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필요재원 규모를 과소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당수준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¹⁵⁾.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할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이들 계층의 국민연금수급자격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입각한 지원)이 상당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년 10월)된 후에는 공적부조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14) 인구구조의 변동을 감안한 의료보험지출 예산의 (GDP 대비) 규모가 1997년도와 2025년 사이에 60% 정도 증가하였다.

15) 일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예산증가액이 연간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공적부조지출액은 1999년 기준으로 6.8~7.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GDP 대비 1.3~1.5%에 이를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공적부조지출액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GDP 대비 공적부조지출액비중은 2.1~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예산 비중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표 5〉 예산상의 사회보장지출

(단위: 억원, %)

	1997	1998	1999
사회보장 계	42,070 (0.93)	45,761 (1.02)	61,051 (1.26)
의료보험	10,915 (0.24)	11,329 (0.25)	12,667 (0.26)
보훈	10,037 (0.22)	10,554 (0.23)	10,799 (0.22)
근로자 복지	1,508 (0.03)	1,812 (0.04)	1,608 (0.03)
기타사회보장	19,405 (0.43)	21,528 (0.48)	35,217 (0.72)
국민연금	206 (0.00)	537 (0.00)	729 (0.01)

주: 1. 괄호 속의 수는 GDP 대비 비율을 뜻하며 1999년도 GDP는 잠정치를 사용하였음.
2. 추정포함 최종예산임.

〈표 6〉 사회보험급여액

(단위: 억원, %)

	1997	1998
사회보험 계	86,568 (1.91)	112,614 (2.52)
국민연금	14,855 (0.33)	24,397 (0.54)
의료보험	55,366 (1.22)	65,713 (1.46)
고용보험	787 ¹⁾ (0.01)	7,994 (0.17)
산재보험	15,560 (0.34)	14,510 (0.32)

주: 1. 괄호 속의 수는 GDP 대비 비중임.
1) 실업급여액만 포함시켰음. 이는 실업대책비에 직업훈련, 고용안정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IV. 정책적 시사점

현재 비록 주요 사회보험의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표 7〉 GDP대비 사회보장예산 전망

(단위: %)

연도	사회보험							공적부조 (⑥)	계 (①~⑥)
	공적연금			의료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⑤)	계 (①~⑤)		
	국민연금 (①)	직역연금 (②)	소계 (①+②)						
2000	0.49	0.99	1.49	1.94	0.18	0.37	3.99	0.94 ¹⁾	4.93
2005	1.22	1.04	2.27	2.11	0.18	0.40	4.96	0.94	5.90
2010	2.37	1.52	3.90	2.27	0.18	0.41	6.77	0.94	7.71
2015	3.93	2.12	6.05	2.43	0.18	0.42	9.08	0.94	10.03
2020	6.25	2.89	9.15	2.58	0.18	0.42	12.34	0.94	13.28
2025	9.09	3.73	12.83	2.71	0.18	0.42	16.15	0.94	17.09
2030	11.68	4.24	15.92	2.80	0.18	0.41	19.32	0.94	20.26

주: 1) 이 표의 공적연금 지출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에서의 지출규모를 의미함.

사회보장예산의 개편은 그 절대적인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것보다 비대한 사회보험 특히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빈민층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 등의 확대와 함께 이들 제도의 전달체계의 합리화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의 사회보험예산 비중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화되고 향후 노령화의 진전과 함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며 의료보험의 경우 앞으로 노령화 및 보전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지출이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생활보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공적부조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예산의 개편은 그 절대적인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것보다 비대한 사회보험 특히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의료보험의 경우 인위적인 지출 수준의 상향조정보다는 의료보험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의료보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빈민층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 등의 확대와 함께 이들 제도의 전달체계의 합리화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적부조 예산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복지예산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부조의 규모를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시킬 경우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공적부조 정상화 진행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GDP 대비 공적부조의 규모(혹은 공적부조와 실업예산의 합)를 단계적으로 2005년까지 미국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 약 41% 정도(혹은 19% 정도)의 다소 무리한 공적부조의 증액이 요구된다¹⁶⁾.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사회보장관련 지출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지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수혜대상자의 자격요건¹⁷⁾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 16) 연간 경상 GDP 성장률을 8%로 1999년 현재 실업관련예산의 GDP 대비 비중을 1.6%로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home page) 가정하였다.
- 17) 주요 외국의 공적부조의 수혜대상자의 자격은 연령과 자녀수 및 자녀연령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능력파 상관없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부록 1> 사회보장예산 항목 설명

1. 미국

- 국민연금(contribution)=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 Disability insurance + State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 직역연금(contribution)=Railroad retirement + Public employee retirement
- 직역연금(non-contribution)=Veterans' programs
- 의료보험(contribution)=Hospital insurance +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 고용보험(contribution)=Unemployment insurance + Railroad unemployment and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Workers' compensation
- 공적부조 = Public Health + Public assistance + Welfare services

2. 독일

- 직역연금(contribution)=Pension(Wage earners, Salary earners, Mineworkers, Farmers)+ Public employees pensions
- 직역연금(non-contribution)=War victims + War victims' relief + Children's allowances(Public employees)
- 의료보험(contribution)=Sickness and Maternity
- 고용보험(contribution)=Unemployment insurance
- 고용보험(non-contribution)=Unemployment assist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Employment injuries
- 공적부조 = Public Welfare + Equalisation of burdens
- 수당 = Family allowances

3. 영국

- 국민연금(contribution)=Old-age(retirement pensions) + invalidity + Widows benefits & guardians allowances etc(survivors') +Current grants abroad
- 직역연금(contribution)=Public employees(state, local authorities) + military pensions(Armed Forces ret. pay, Royal Ulster Constabulary)
- 직역연금(contribution)=military pensions(War)
- 의료보험(contribution)=National Health Service + Sickness & Maternity national insurance
- 고용보험(contribution)=Unemployment national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Employment injuries(national insurance)
-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 Redundancy Funds
- 수당 = Family allowances

4. 일본

- 국민연금(contribution) = National Pension

- 직역연금(contribution) = Employees' pension insurance + Employees' pension fund, etc + Farmers' pension fund + Seamen's insurance +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organization + mutual aid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erson + public employees pension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War victi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Health insuran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의료보험(non-contribution) = Health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 =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공적부조 = Public assistance + Social welfare
- 수당 = Family allowance(children allowance)

5. 프랑스

- 국민연금(contribution) = National old-age insurance fund + Other institute of general scheme
- 직역연금(contribution) = Employees in agriculture + Occupiers of agricultural holdings + Special schemes for salaried workers + Social security schemes for non-salaried non-agricultural workers + Supplementary pension schemes for salaried workers + Public employees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War victi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National Sickness insurance fund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공적부조 = National family allowance + National Habitat Fund + National Housing Aid Fund + Special fund for old-age

6. 스웨덴

- 국민연금(contribution) = Old-age pension + Survivors' pension + Invalidity pension + Others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Benefits for war victi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Medical care + Sickness + Maternity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 = Employment injuries
- 공적부조 = Public assistance
- 수당 = Family allowance

7. 캐나다

- 국민연금(contribution) = Canada Pension Plan + Quebec Pension Plan + Public Service Pensions
- 국민연금(non-contribution) = Old-age Security + Veterans' and Civilians' Disability Pensions: Survivors' benefits and disability Pensions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Veterans' Progra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Medical Care Insurance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 = Workers' Compensation
- 공적부조 = Canada Assistance + Other Welfare Programs
- 수당 = Federal employment programmes + Provincial Tax Credits + Family Supplements

8. 오스트리아

- 국민연금(contribution) = Pensions insurance
- 직역연금(contribution) = Federal employees' pensions + Other public employees' pensions + County and municipal levels + Postal employees + Railway employees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War victi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Sickness and maternity insurance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 = Employment injuries
- 공적부조 = Public Assistance + Refugee camps & installation
- 수당 = Family allowance

9. 핀란드

- 국민연금(contribution) = Pensions(Old-age, Survivors, Invalidity, Unemployment, Others, income from capital, Administration) + General health service
- 국민연금(non-contribution) = Care of feeble minded(General health services)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Benefits for war victi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Sickness & maternity
- 의료보험(non-contribution) = Medical care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 = Employment injuries insurance
- 공적부조 = Public Assistance(Maternity assistance, Day nurseries etc, Child welfare, Social home help service, Rent subsidies, Old peoples' home, General assistance, Care of infirms, Rehabilitation)
- 수당 = Family allowances

10. 덴마크

- 국민연금(contribution) = Old-age pension
- 국민연금(non-contribution) = Survivors pension + Invalidity pension
- 직역연금(contribution) = Public employees' pension
- 직역연금(non-contribution) = Benefits for war victims
- 의료보험(contribution) = Sickness & maternity insurance
- 의료보험(non-contribution) = Medical care
- 고용보험(contribution) = 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contribution) = Employment injuries
- 공적부조 = Public Assistance
- 수당 = Family allowances

<부록 2> 국민연금 총지출 추계를 위한 기본가정

<부표 1> 출산율 및 평균수명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합계출산율 (명/부부)	1.74	1.71	1.71	1.74	1.80	1.80	1.80	1.80
평균수명 계 (세)	73.52	74.85	76.10	76.99	77.48	78.08	78.54	78.95
남자	69.55	71.02	72.27	73.27	73.87	74.47	74.97	75.42
여자	77.42	78.64	79.74	80.69	81.19	81.68	82.09	82.45

자료: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12.

<부표 2> 연령구조별 인구 및 부양비

(단위: 명, %)

	합 계	인구			구성비			부양비		
		0~14	15~64	65이상	0~14	15~64	65이상	유년	노년	계
1995	45,092,991	10,536,828	31,899,511	2,656,652	23.4	70.7	5.9	33.0	8.3	41.4
2000	47,274,543	10,232,813	33,671,162	3,370,568	21.6	71.2	7.1	30.4	10.0	40.4
2010	50,617,752	10,079,949	35,505,657	5,032,146	19.9	70.1	9.9	28.4	14.2	42.6
2020	52,358,327	9,012,864	36,446,194	6,899,269	17.2	69.6	13.2	24.7	18.9	43.7
2030	52,743,608	8,448,465	34,130,311	10,164,832	16.0	64.7	19.3	24.8	29.8	54.5
2040	51,411,522	8,122,585	31,181,812	12,107,125	15.8	60.7	23.5	26.0	38.8	64.9
2050	48,507,904	7,492,597	29,087,867	11,927,440	15.4	60.0	24.6	25.8	41.0	66.8
2060	45,322,564	7,037,715	27,523,271	10,761,578	15.5	60.7	23.7	25.6	39.1	64.7
2070	42,457,156	6,696,084	25,452,491	10,308,581	15.8	59.9	24.3	26.3	40.5	66.8
2080	39,700,765	6,215,597	23,888,501	9,596,667	15.7	60.2	24.2	26.0	40.2	66.2

자료: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12.

<부표 3> 경제변수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04	2005~10	2011~20	2021~30	2031~80
물가상승률	5.0	5.0	4.0	4.0	4.0	4.0	3.5	3.0	2.5
임금상승률	9.0	8.0	9.0	9.5	9.5	8.0	7.0	6.0	5.5
	(4.0)	(3.0)	(5.0)	(5.5)	(5.5)	(4.0)	(3.5)	(3.0)	(3.0)
이자율	12.0	14.0	12.0	10.0	9.0	7.5	6.5	6.0	5.5
	(7.0)	(9.0)	(8.0)	(6.0)	(5.0)	(3.5)	(3.0)	(3.0)	(3.0)

주: ()안은 실질.

자료: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12.

- 소득관련변수

○ 지역가입자의 소득

- 사업장가입자: 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
- 농어촌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42.25%
- 도시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80%

○ 연령별 소득분포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분포
- 농어촌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분포
- 도시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의 소득분포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의 조세제도(II) 법인세, 소비세 -

金 珍 永 연구위원(jykm19@kipf.re.kr)

I. 법인세

1. 개요

법인세에 관한 업무는 직접세를 관장하는 內國稅廳(Inland Revenue)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해당 법인이 회계기간중 올린 이윤을 근거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제도는 1965년에 도입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이윤규모가 작은 소규모법인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 시작했다. 법인세율은 1965년 도입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여러 차례의 세율조정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인하하고 과세소득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이 10%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한 차례의 세율조정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법인의 배당과 관련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이중과세 조정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단 법인단계에서는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는 수취배당액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수취배당액의 25%를 공제하고 과세한다.

한편 법인에 대한 각종 특별조치 때문에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해 배당을 지불할 때에 세율의 25%로 豫納法人稅(advanced corporation tax: ACT)를 납부하고 예납법인세만큼은 본래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으로 구분되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 거주 법인: 사업에 관계되는 관리 및 지배의 중심이 영국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전세계소득과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법인세의 대상
 - 비거주법인: 영국 국내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한 사업소득과 지점 또는 대리점이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및 자본이득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신탁재산(unit trust), 외국기업의 지점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파트너십(partnership)은 개인으로 취급된다.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 ① 주주는 주식의 인수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고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주식회사
- ② 주주가 회사의 해산시 받는 금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주식회사
- ③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주식회사

3. 과세구간과 세율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 즉 소득과 자본이득에서 일정한 경비와 공제가능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대상소득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영국 내에서의 사업이익
- ② 자유직업 소득
- ③ 이자, 연금, 로열티 및 기타 연차지불금 (annual payments)
- ④ 외국의 저당증권, 채권 등에 의한 소득
- ⑤ 외국소재 재산으로부터의 소득
- ⑥ 기타소득
- ⑦ 영국에 있는 부동산에서의 임대료수입 및 프리미엄(premium)
- ⑧ 국채 또는 지방자치채권에서의 이익
- ⑨ 급여소득
- ⑩ 영국 거주법인으로 부터의 수취배당 등

과세구간 및 세율은 <표 1>과 같다.

<표 1> 과세구간 및 세율

(단위: 파운드)

과세소득	세율
0~10,000	10%
10,001~50,000	한계공제 1/40 (한계세율 22.5%)
50,001~300,000	20%
300,001~1,500,000	한계공제 1/40 (한계세율 32.5%)
1,500,001 이상	3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나, 과세소득이 1만 파운드 이하인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5만에서 30만파운드 사이인 법인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일정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한계공

제제도(marginal relief)를 시행하고 있다.
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계공제액} = (\text{한도액상한} - \text{순이익}) \times \frac{\text{과세소득} \times \text{한계공제비율}}{\text{순이익}}$$

현재 한계공제비율은 두 개의 한계공제구간에서 모두 40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이 한계공제제도에 의해 산출된 한계세율은 10,001~50,000구간이 22.5%, 300,001~1,500,000구간이 32.5%이다¹⁾.

한편 영국근해의 대륙붕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취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석유수입세(petroleum revenue tax: PRT)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 세율은 50%이다.

4. 세액산정방식

손익계산서의 세 공제전 이익
세법상 신고조정 (+) 가산
(-) 감산

- (-) 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제외
- (-) 수취배당금 불산입
- (=) 사업소득(trading profits)
- (-) 전기이월손실 공제
-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가산
- (=) 소득합계(total profits)

법인세율은 1990년대 들어 여러 차례의 세율조정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인하하고 과세소득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이 10%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한 차례의 세율조정이 있었다.

- (-) 연차지불금 공제(부담금)
- (+) 자본이득 가산
- (=) 과세소득

II. 부가가치세 및 각종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몇몇 특수 품목에 대한 소비세 업무는 관세·간접세청(Her Majesty's Customs and Excise 이하 HMCE로 칭함)이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과 간접세청은 1909년에 통합되었다.

1.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1973년 4월에 구매세(Purchase Tax)와 선별적 고용세(Selective Employment Tax)를 대체하면서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의 세율은 10%였으나 여러 차례의 등락을 거친 후 1991년부터는 현재의

1) 한계공제구간의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액은 한도액 상한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 후 이 액수로부터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구한 한계공제액을 차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과세소득이 4만파운드인 법인의 법인세액(계산의 편의상 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한다고 가정)은 일단 한도액 상한인 5만파운드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적용한 다음 (40,000 x 0.2 = 8,000) 이 액수에서 한계공제액(1/40 x (50,000 - 40,000) = 250)을 차감함으로써 얻어지는 7,750파운드 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표 1)과 같이 각 한계공제구간의 한계세율을 구할 수 있다.

표준세율인 17.5%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연료와 전기에 대해서는 5%의 저세율(reduced rate)이 적용되며 일부 품목에는 0% 세율이 적용된다(다음을 참조할 것).

- 零稅率
 - 식료품, 상하수도, 책, 맹인 및 장애자용 용품, 가게 및 자선 단체용 연료 및 전기, 거주용 빌딩의 건설, 방호빌딩, 특정한 국제서비스, 이동주택, 금, 지폐, 이동의류, 특수의료(근로자 보호용 등), 수출, 연료 및 동력, 공공교통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구,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에 적용
- 비과세
 -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우편, 도박, 장래, 복권, 교육, 의료 및 복지서비스, 스포츠 및 예술활동 등에 적용
- 면세
 - 1997년 11월 26일 현재 연간 매출액이 4만 8천파운드 이하인 사업자(4만 6천파운드 이하는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면제)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자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이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과 파트너십(partnership),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세액산정은 매출세액(output tax)에서 매입세액(input tax)을 차감하는 방식을 따른다.

비과세·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영세율은 매출세액 면제 및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며, 비과세는 매출세액은 면제해 주지만 매입세액의 환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1973년 4월에 구매세와 선별적 고용세를 대체하면서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의 세율은 10%였으나 여러 차례의 등락을 거친 후 1991년부터는 현재의 표준세율인 17.5%가 적용되고 있다.

2. 물품세

역사적으로 물품세(Excise Tax)는 1643년 시민전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맥주에 대해 과세한 데서 시작된다. 이 세금은 많은 조세저항 속에서 임시로 부과되었던 것이지만 이후 영구화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보다 많은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정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물품세는 세수 증가라는 목적 외에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강하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관련세가 도입되고 강화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물품세 부과 대상 재화와 과세내용 및 세수는 <표 2>와 같다.

HMEC의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소비세 품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담배소비세

담배에 대해서는 17.5%의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 세포함 소매가격 대비 세율은 약

〈표 2〉 소비세목과 세수

세목 및 과세내용	세수(HMCE가 징수한 세액중 차지하는 비중)
주세: 가장 오래된 소비세 종목으로 17세기부터 맥주에 대해 처음 도입되었음. 알콜량에 따라 부과되거나(맥주, 증류주) 알콜도수에 따라 부과됨(와인의 경우).	1997/8: £5,700m (6.4%) 1998/9: £5,900m (6.3%)
오락 및 도박세: 1948년 도입. 오락기구에 대한 면허세, 복권이나 일반 도박에 대한 증가세 등.	1997/8: £1,600m (1.7%) 1998/9: £1,500m (1.6%)
담배세: 현재의 틀이 갖추어진 것은 1979년으로 중간단계의 제품에는 부과되지 않고 최종생산품에 대해서만 부과됨. 궤련을 제외한 담배제품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궤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가세가 부과되고 있음.	1997/8: £8,400m (9.3%) 1998/9: £8,300m (8.9%)
항공여객세(Air Passenger Duty): 1994년 11월에 도입. 영국 내의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과. 종착지가 EU국가인 승객에 대해서는 1인당 £10(2000년부터는 £5로 감면할 예정임), 그 밖의 경우에는 £20.	1997/8: £500m (0.5%) 1998/9: £800m (0.9%)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goods)가 아닌 비재화(bads)에 부과되는 조세항목	
1.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 1996년 10월부터 매립면허가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부과되기 시작. 2000년 4월부터는 톤당 £10의 세액을 £11로 상향 조정.	1997/8: £400m (0.4%) 1998/9: £300m (0.3%)
2. 채석장관련세(Aggregates Tax): 채석장에서 야기되는 각종 환경비용 - 소음, 먼지, 생태계훼손 등 - 을 가격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세. 현재 톤당 £1.60의 단일세율이 적용.	
3. 기후 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에너지의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이나 상업용 에너지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2000년 법률 제정을 통해 2001년 4월부터 부과할 예정.	
연료세(Fuel Duties): 공식적인 명칭은 탄화수소세(Hydrocarbon Tax)이다. 온실효과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정유(petrol; 미국의 gasoline에 해당)에 대해 부과되는 과세로 1928년부터 부과되어 왔으며 1993년부터는 경유(diesel)에 대해서도 부과되기 시작함.	1997/8: £19,500m (21.6%) 1998/9: £21,500m (23.0%)

자료 : <http://www.hmce.gov.uk/> 에서 발췌

(단위: %, 파운드/천개비, 파운드/kg)

	궤련		업궤련	각련	기타
	종가세율	종량세액			
세율	20	57.64	85.61	85.94	37.65

자료: 김진수·성영재, 『담배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II)』, 한국조세연구원, 1994.

14.89%이다.

궤련 1갑의 경우 세액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세 포함 소매가격 = 제조판매원가(유통이윤 포함)
+ 종량세(1.1528파운드)

- + 증가세(세포함 소매가격의 20%)
- + 부가가치세(세포함 소매가격의 약 14.89%)

나. 주세

증량세로서 양조장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인출시 과세한다.

- 맥주
 - 발효전 액체인 맥아즙에 대해 1000° gravity 초과 1° 당 1,108파운드/100리터로 세액을 결정(6% 공제를 허용)
- 증류주
 - 알콜 100리터당 1,981파운드 과세
- 와인
 - 알콜도수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와인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파운드/100리터)

알콜도수	~15	15~18	18~22	스피클링 와인
세율	125.96	217.25	250.59	208.00

기타 주류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파운드/100리터)

	세율		세율
cider and perry	21.32	콜러(알콜함량, %)	12.60
		1.2~2.1	20.99
		2.0~3.0	29.39
		3.0~4.0	37.80
		4.0~5.0	46.19
		5.0~5.5	


다. 탄화수소세(Hydrocarbon Tax)

(단위: %, 파운드/리터)

과세대상	세율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유연(고급)	0.3912	산업용 경질유	0.0214
무연(고급)	0.3430	가정용 경질유	0.03147
경유	0.3130	산업용 중질유	16.7
		발전용 중질유	23.3

특정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물품세는 세수증가라는 목적 외에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강하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관련세가 도입되고 강화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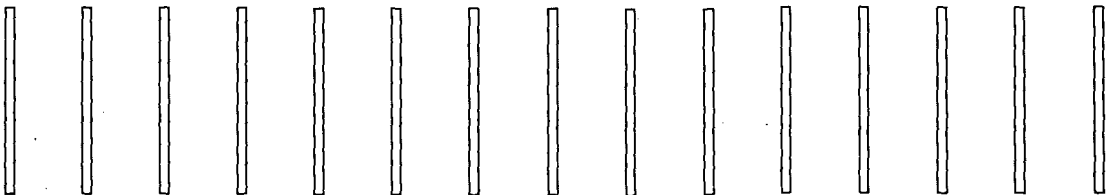
참고문헌

- 임주영 외,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최준욱, 『영국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6.
- Inland Revenue, <http://www.inlandrevenue.gov.uk/home.htm>.
- Her Majesty's Customs and Excise, <http://www.hmce.gov.uk/>.
- Her Majesty's Customs and Excise, *The Government's Expenditure Plans 2000-2001 to 2001-2002*, April 2000. 



정책흐름

1.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
2. 휘발유·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
3.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
4.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에서 2000년 5월 30일에 발표한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전문입니다.

- 정부는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0년 5월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음.
- 정부결산서는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 9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8월 20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 1999년도 결산서의 특징은 종전 결산서가 계수 위주로 작성되었으나 1999년 결산부터는 재정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 결과가 예산 편성이나 재정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1999년도 결산결과, 4조 4,332억원(일반회계 2조 3,724억원, 특별회계 2조 608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비교적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4조 122억원(일반회계 2조 6,814억원, 특별회계 1조 3,308억원) 증가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 4,920억원 축소하였고,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재원 없는 이월(1조 5,693억원)이 해소되었음.
- 또한, 이월액이 1998년보다 1조 4,508억원 감소(3조 3,713억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1999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구조조정채권이자 비용으로 4조원 지출), 실업자 및 저소득층보호(공공근로사업으로 43만명에 1조 9천억원 지출 등), SOC (1998년 11조 5천억원→1999년 13조 4천억원 지원) 및 지식기반산업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음.
-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하였으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조세수입의 증가 등으로 GDP기준 1998년 $\Delta 4.2\%$ (1999년 예산 $\Delta 5.1\%$)에서 1999년 $\Delta 2.7\%$ 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각 부문별로 보면, 세입세출은 세입이 149조 9,850억원, 세출이 142조 1,805억원으로 예산(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각각 101.0%, 92.3% 집행되었으며 1998년 대비로는 각각 13.1%, 11.6% 증가하였음.

- 세입의 경우 1998년에 비해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10.6%(6조 2,29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이 1998년 2,589억원에서 1999년 3조 3,00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정부주식 매각수입 증가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른 정부보유주식을 증권시장 활황에 때맞추어 적기에 매각하였기 때문임.
- 세출의 경우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의 감소 등으로 예산 현액보다 7.7% 적게 집행되었으며,
-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1998년에 비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실업지원 및 SOC투자 확대 등으로 각각 27.7%, 5.9% 증가한 반면, 방위비와 교육비는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각각 1.7%, 5.9% 감소하였음.
- 1999년도 결산대상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한 5조 4,671억원이 발생하였음.
- 총자산은 195조 237억원이며, 총부채는 133조 8,852억원으로 순자산은 61조 1,385억원임(1998년 대비 22.9% 증가).
- 순자산의 증가는 국민주택기금의 복권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증가, 국민연금기금의 보험료 및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따라 투자자산 및 자본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국가채권은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자금지원 등 융자금채권 등의 증가로 1998년보다 8조 6,866억원 증가한 126조 7,447억원임.
- 1999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998년보다 18조 2,781억원 증가한 89조 7,154억원(지방정부채무 제외)으로 GDP 대비 18.6%에 해당함.
- 1999년중 국가채무의 증가는 IMF 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재원 마련 등을 위해 국채발행을 증가한 데 주요원인이 있음.
- 국채 증가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가 10조 4천억원,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주택채권이 1조 8천억원 및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1조 9천억원 증가하였음.

휘발유 · 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2000년 5월 29일에 발표한 「휘발유 · 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의 전문입니다.

- 최근 국제원유가가 지난 3월 27일 OPEC 산유국의 증산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 연초 국제원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지난 3월 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적용했던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에너지 소비절약과 재정적자 축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유가 예측전문기관에서는 금년 국제원유가가 연평균 20~22\$/B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국제원유가 동향

(단위 : \$/B)

	1999평균	2000.1월	2월	3월	4.1~20
Dubai油	17.20	23.41	24.72	25.11	21.88

- 탄력세율 환원내용
- 대상 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 등유

- 금번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환원은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 국무회의(4월 25일) 심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세율조정내용

(단위 : 원/l)

	현행 → 조정	조정폭	소비자가격	
			2·3월	4월
휘발유(교통세)	600 → 630	+30(+39.0)	1,243	1,219
경유(교통세)	137 → 155	+18(+23.3)	596	585
등유(특소세)	43 → 60	+17(+21.5)	518	498

주: ()는 교육세(15%), 지방주행세(3.2%), 부가가치세(10%) 포함

※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 문답자료

1. 휘발유 · 경유 ·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 환원 배경

- 국제원유가(Dubai 기준)는 3월 27일 OPEC 총회 이후 산유국의 증산과 미국 석유채고 증가 등으로 4월 평균 배럴당 21달러대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 지난 3월 2일 OPEC 감산 지속, 세계석유채고 감소 등으로 국제원유가(Dubai 기준, 2000년 1월 26일 ~2월 25일간)가 배럴당 24달러대로 급등함에 따라
- 증산 ·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 등을 위



하여 3월중 석유제품 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하였음.

- 하지만, 지난 3월 27일 OPEC 총회 이후 산유국의 증산과 미국 석유재고 증가 등으로 4월 평균 배럴당 21~22달러에서 하향 안정세

(단위 : \$/B)

	1999평균	2000.1월	2월	3월	4.1~20
Dubai油	17.20	23.41 (23.25)	24.72 (24.52)	25.11 (25.38)	21.88 (22.45)

주: () 내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 美 ESAI 등 국제유가 예측전문기관에서는 금년 4월 이후 OPEC 산유국의 증산 등으로 국제유가(Dubai 기준)가 배럴당 20~22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국제유가 안정으로 5월 석유제품 가격 하락 요인이 생기므로
- 재정적자 축소,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인하였던 탄력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

2. 탄력세율 환원이 물가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 금번 탄력세율 환원조치에도 불구하고 5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국제원유가 하락폭(2000년 3월 26일~4월 24일간 평균 22.5달러, 3월 대비 △2.9달러)이 크기 때문에
- 이러한 유가인하요인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5월 중 소비자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
-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환원조치로 인해 금년중 6,000

억원 세수증가 예상

- ※ 세수증가 효과 : 금년중 6,000억원
[교통세 3,500억원, 특소세 1,150억원, 교육세 700억원, 주행세 110억원, 부가가치세 540억원]
- ※ 지난 3~4월간(2개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1,800억원 수준으로 추정

3. OPEC 산유국 증산 등으로 국제원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석유제품 세율을 추가 인상할 것인가

- 국제원유가(Dubai 기준)가 연평균 배럴당 20~22달러로 전망되고 현재로서는 큰 폭의 국제유가 추가 하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석유제품 세율 추가 인상 여부는 국제유가 동향, 환율 추이 등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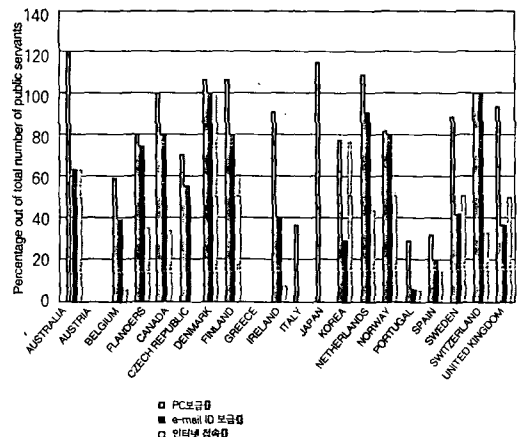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

※ 이 자료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2팀에서 2000년 5월 31일에 발표한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의 전문입니다.

- 이하는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 활용」에 대해 정부간 비교를 위한 예비 조사결과로서
 - 본 조사를 바탕으로 OECD PUMA 회의(2000년 4월 27~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각 국간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OECD는 새롭고 향상된 국가경영 모델을 모색중이며, IT를 활용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강화는 그 주요한 과제임.
 - 주요 설문항목은 인터넷 접속성(connectedness), 온라인 정보 제공, 상담(consultation), on-line 서비스, 향후 과제 등이며,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설문에 응답함.
 - 최종결과는 9월까지 상세 조사 후에 2000년 11월에 발표 예정이며 본 내용은 중간 보고서에 해당

- ▶ 한국의 PC 보급률 및, 인터넷(웹) 접속률은 매우 높으나 e-mail 주소 보급률은 매우 저조 (<별첨 1> 참조)
 - PC 보급률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은 100% 이상이며, 한국은 78%로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다음으로 높은 편임.
 - 웹 접속률은 덴마크 100%, 한국 78%, 오스트레일리아 64%로서 한국 공무원의 웹 접속률은 세계 2위임.
 - 한국만이 모든 PC가 웹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보안대책이 중요시됨.

(그림 1) 각국 공무원의 인터넷 접속성 비교



1. 정보화 현황조사

- 한국의 인터넷 접근비용은 세계 최저로서 OECD 회원국 평균비용보다 50% 저렴
 - 그러나 주민 천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수)는 제일 적음.
- 공무원의 정보기술 접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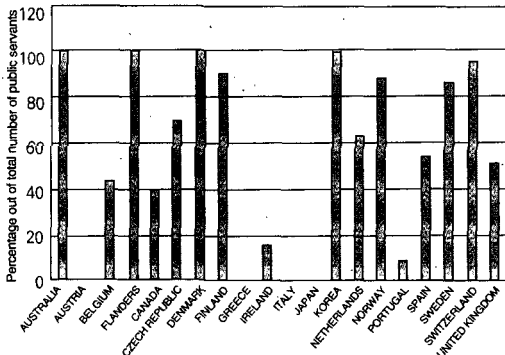
- e-mail 주소 보급률은 덴마크, 스웨덴 등이 100%인 데 비해 한국은 포르투갈(5%), 스페인(19%)에 이어 29%로 매우 저조함.

2.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 온라인 정보 제공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온라인 정보 제공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overall policy)이 마련되어 있음.
 - 오스트리아의 Austrian Administration Reform Program, 캐나다의 Access to Information Act, 체코의 State Information Policy 등
 - 한국 정부기관의 웹 서비스 비율은 100%로 37개 정부부처 모두가 웹 서비스를 하고 있음(〈별첨 2〉 참조).

- 온라인 서비스 촉진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 정책
 -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서독, 노르웨이, 영국, 한국 등이 수립되어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전자서명법을 제정중에 있음.

〈그림 2〉 각국 정부기관의 웹 페이지 제공 비교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실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덴마크,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실시	벨기에, 캐나다, 체코, 서독, 스페인, 폴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책
 - 한국에는 온라인 정보 제공이나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과 정책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온라인 정보 제공시 비용부과 정책 제정 현황〉

있음	호주,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폴란드,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없음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서독,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터키

〈웹을 통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시 비용 부과 정책 제정 현황〉

있음	호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없음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폴란드, 캐나다, 체코, 서독,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례
 - 소득세 신고 분야에서 한국은 전자적으로 서식은 제공하나 전자접수는 시험운영중임.
 -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터키 등은 개인소득 및 세금 관련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나 한국은 제공하지 않음.
 - 온라인을 이용한 질문 비율은 0.1%로 극히 저조하며, 전화나 직접방문이 대부분(99.6%)임.
 - 온라인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타국에 비해 우위에 있음.

- 사례: 공공 및 민간분야에 대한 전국적인 고용정보 제공, 온라인 구직 접수와 여러 가지 매체(인터넷, CD-ROM, KIOSK, 신문 등)를 통한 정보 제공, 민간고용단체와 협력한 서비스 제공 등
- 기업의 정부에 대한 온라인 질문비율은 캐나다 54%, 한국 30%, 스웨덴 25%, 터키 25% 등으로 높은 편임.

- 경쟁력 있는 정부서비스 제공 방안
 -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인증, 자료의 최신화 보증, 통신 보안 등 대책 마련
 - 온라인 서비스의 가격 정책 제정, 시스템 구축 표준 및 framework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 국민 참여 확대
 - 정보접근 소외(digital divide) 계층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IT를 이용한 NGO 및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모색 등

3. OECD 회원국이 제시한 향후 과제

- IT를 활용한 정부생산성 향상
- IT를 정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 즉 IT 사용시 단순 전산화 개념을 벗어나 기존 업무형태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표 1〉 소득세 신고 분야에서 수단별 질문비율

(단위: %)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온라인	5	4	0	5	0	0.1	7	10	10
전화	50	60	41	10	78	67.8	45	70	10
팩스	5	1	-	10	-	0.1	3	(1)	-
우편	25	15	55	60	0	0.2	5	10	78
방문	15	20	4	15	22	31.8	40	5	2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 기업의 대정부 질문시 수단별 활용비율

(단위: %)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온라인	6	0	54	11	5	30	12	25	25
전화	-	59	45	56	10	50	63	45	30
팩스	-	8	0.7	4	10	4	16	5	
우편	-	28	0.2	27	60	6	9	15	
방문	94	5	0.1	25	15	10		10	40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종합평가 및 한국의 당면과제

○ 종합평가

- 지식정보사회에서 전자정부를 통한 비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음.
- 예비 조사결과만으로는 국가간 전자정부 추진에 뚜렷한 비교우위를 가리기 어려움.

○ 한국의 당면과제

- 현재까지 한국 전자정부는 통신망, PC 보급 등 양적인 성장에 치중, 향후에는
- 문서관리, 정보 공동활용 등 기존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재설계(BPR)를 추진할 필요
-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행정처리 응용시스템의 개발 및 시스템간의 자동 연계 방안 모색
-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자 인증을 위한 국민, 기업 등에 대한 전자서명 발급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 한국은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정비나 IT를 이용한 민원공개, 시민참여 등에서 앞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외홍보는 미흡한 상황

〈별첨 1〉 공무원의 인터넷 접속성

	공무원수	PC 보급	PC 보급률(%)	e-mail 주소보급	e-mail 주소 보급률(%)	웹 접속	웹 접속률(%)
Australia	113268	137000	120	72872	64	72872	64
Austria	-	49153		-		-	
Belgium	60000	36000	60	24500	40	3600	6
Flanders	11200	8947	80	8498	75	4008	36
Canada	194000	194000	100	15550	80	167000	35
Czech Republic	33730	24106	71	18850	56		
Denmark	6215	6675	107	6215	100	6215	100
Finland	118200	126624	107	94000	80	70900	60
Germany	-			-			
Greece	-			-			
Ireland	22000	20000	91	9000	41	1500	7
Italy	660563	246516	37	-		-	
Japan	581772	671098	115	-		-	
Korea	140000	109372	78	41233	29	109372	78
Netherlands	100100	110000	109	91300	91	44000	44
Norway	130000	106000	82	103880	80	68000	52
Portugal	294502	84352	29	13363	5	13568	5
Spain	848823	269753	32	161276	19	127323	15
Sweden	63000		89		42		51
Switzerland	36000	36000	100	36000	100	11880	33
Turkey	2042058	N/A					
United Kingdom			93		36		50



〈별첨 2〉 정부부처 웹 페이지 운영 현황

	정부 기관수	웹 페이지 제공 기관 수	비율
Australia	159	145	91
Austria	12	11	92
Belgium	40	-	100
Flanders	1	1	100
Canada	156	119	16
Czech Republic	23	19	82
Denmark	20	20	100
Finland	123	111	90
Germany	-	-	90
Greece	19	16	84
Ireland	20	20	100
Italy	-	-	-
Japan	26	26	100
Korea	37	37	100
Netherlands	13	13	100
Norway	27	185	67
Portugal	655	251	38
Spain	150	131	87
Sweden	280	260	93
Switzerland	65	62	95
Turkey	-	-	80
United Kingdom	-	-	100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 이 자료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2000년 6월 8일에 발표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의 전문입니다.

I. 과세제도 변경 개요

- 2000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됨.
-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로 축소되며 종전 간이과세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됨.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간 매출액 4,800만~1억5천만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
종전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과세제도 개편으로 약 165만명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됨.
 - 특례
 - ▶ 간이 : 131만 7천명
 - ▶ 일반 : 2만 1천명
 - 간이
 - ▶ 일반 : 27만 1천명
 - 일반
 - ▶ 간이 : 4만 7천명
- 그러나 과세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

II. 과세제도 변경 취지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당초 세무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시행(1977년)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 실제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위장하기 위해 과표양성화를 기피하고 있고
 -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적은 데다 매출액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고 있어
 -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렵게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정상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 소규모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



Ⅲ. 변경되는 내용

1.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됨.

- 작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됨.
 -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2000년 상반기 신규개업자는 6월 30일 현재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년 6월 20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함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과세방식은 종전과 같음).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 (20\%, 30\%, 40\%) \times \text{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로 세분화(20~50%)되어 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추고 20%, 30%, 40% 3단계로 단순화하되
 - 종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음식·숙박: 50%, 부동산임대: 43%, 건설: 37%, 소매: 20% 등
- 종전에 2%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 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연도별 실제세율은 다음과 같고, 제도변경 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이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증가는 없음.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이후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2	2	2	2	2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수임어업	2	2.25	2.5	2.75	3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2	2.5	3	3.5	4

3.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 종전에는 과세특례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나
- 2000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 다만, 납부면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따라서, 종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규모의 영세사업자는 과세제도 변경 후에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어 종전과 같이 세부담은 없게 됨.

종 전	2000년 7월 1일 이후
소액부징수자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기준)	납부면제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4.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일시적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경감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
-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액 × 2%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0% 또는 3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 2000년 7월 1일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연차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향후 매입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3/103→5/105)하여
-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구입액의 5/105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세액 = 농·축·수·임산물 구입액 × 5/105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작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2000년 2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20%를 경감해주고
• 2001년(1기, 2기)에는 10%를 경감해줌.

○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2000년 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년 2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줌.

매출액의 10%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행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

— 일반과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품은 간이과세자(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한 것으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당해 재고품의 매출시에는 일반과세자 세율 10%로 과세되는데서 발생하는 다른 일반과세자와 형평문제를 조정하고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임.

5.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음(1년에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

○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6개월)단위로 제1기분은 7월 1일~7월 25일, 제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

○ 예정고지·납부

— 각 과세기간 중간에 1회씩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 1999년까지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를 운영하였었음.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었던 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도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 예정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확정신고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 2000년 1기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 2000년 7월 1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월 1일~7월 25일 신고하는 2000년 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IV. 과세유형 변경 대상자에 대한 안내

1. 과세유형 전환 통지

○ 과세유형 변경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림.

—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더라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사업자등록증 갱신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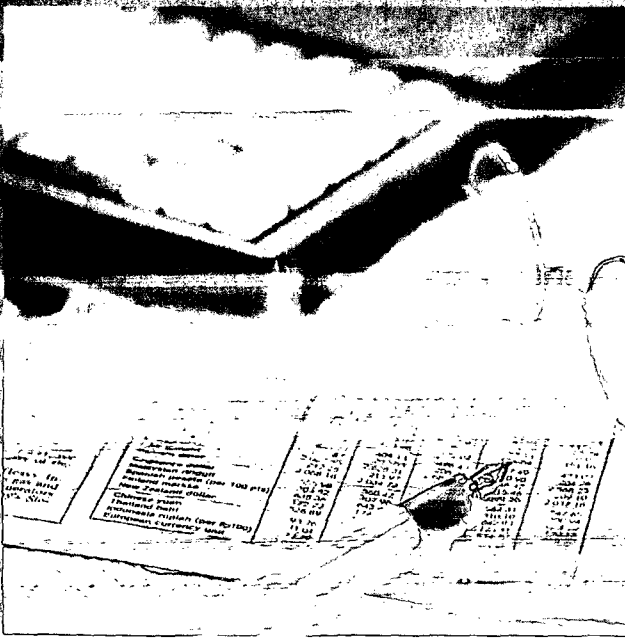
○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갱신하여 교부함.

○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월 1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며,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절차도 함께 안내할 것임.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입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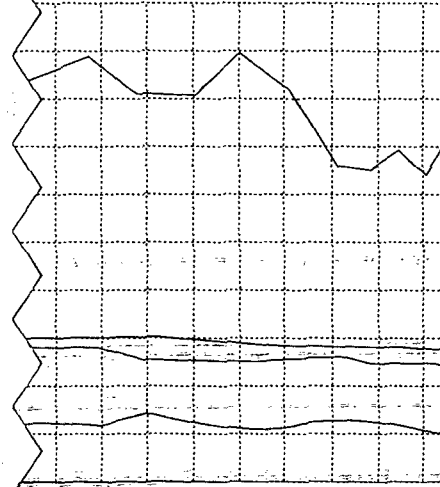
—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월 1일에서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 나머지 사업자는 7월 10일 이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재정 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동할자정수지)



〈표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1980		1981		1982		198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세수입	5,896.9	100.0	7,364.4	100.0	8,529.9	100.0	10,207.4	100.0
1. 소득 및 이익세	1,504.0	25.5	1,958.5	26.6	2,357.0	27.6	2,609.1	25.6
1.1 개인	766.0	13.0	1,024.5	13.9	1,229.7	14.4	1,404.2	13.8
종합소득세	661.4	11.2	886.2	12.0	1,005.5	11.8	1,136.1	11.1
동방위세	104.6	1.8	138.3	1.9	162.0	1.9	184.0	1.8
교육세(이자배당분)	-	-	-	-	62.2	0.7	84.1	0.8
소득세 ¹⁾	-	-	-	-	-	-	-	-
동방위세	-	-	-	-	-	-	-	-
배당및이자소득세	-	-	-	-	-	-	-	-
근로소득세	-	-	-	-	-	-	-	-
양도소득세 ²⁾	-	-	-	-	-	-	-	-
기타	-	-	-	-	-	-	-	-
1.2 법인	737.8	12.5	934.0	12.7	1,127.3	13.2	1,204.9	11.8
법인세	485.2	8.2	594.1	8.1	781.3	9.2	863.7	8.5
동방위세	252.6	4.3	339.9	4.6	320.7	3.8	306.3	3.0
교육세(금융보험분)	-	-	-	-	25.3	0.3	34.9	0.3
1.3 기타	0.2	0.0	-	-	-	-	-	-
부당이득세	0.2	0.0	-	-	-	-	-	-
사업소득세 ³⁾	-	-	-	-	-	-	-	-
부동산소득세 ⁴⁾	-	-	-	-	-	-	-	-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2. 사회보장기여금	72.9	1.2	87.2	1.2	109.6	1.3	131.4	1.3
2.1 피고용자부담금	0.3	0.0	0.4	0.0	2.0	0.0	3.2	0.0
보훈특별회계	0.3	0.0	0.4	0.0	-	-	-	-
국민연금기금	-	-	-	-	-	-	-	-
사회복지사업기금	-	-	-	-	-	-	-	-
보훈기금	-	-	-	-	2.0	0.0	3.2	0.0
진폐기금	-	-	-	-	-	-	-	-
2.2 고용주부담금	72.9	1.2	86.8	1.2	107.6	1.3	128.2	1.3
확재보험특별회계	69.4	1.2	81.3	1.1	103.1	1.2	125.0	1.2
직업훈련촉진기금	3.2	0.1	5.5	0.1	4.5	0.1	3.2	0.0
국민연금기금	-	-	-	-	-	-	-	-
진폐기금	-	-	-	-	-	-	-	-
2.3 자영업자및미취업자	-	-	-	-	-	-	-	-

(단위: 십억원, %)

1984		198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1,077.3	100.0	12,105.1	100.0	Tax Revenue
2,866.8	25.9	3,474.6	28.7	1. Taxes on Income, Profit & Capital Gains
1,522.2	13.7	1,845.0	15.2	1.1 Individuals
1,229.1	11.1	1,481.6	12.2	Global Income Tax
209.2	1.9	259.6	2.1	Defense Tax on Global Income Tax
83.9	0.8	103.6	0.9	Education Tax of Interest & Dividends
-	-	-	-	Income Tax
-	-	-	-	Defense Tax on Income Tax
-	-	-	-	Dividends & Interest Income Tax
-	-	-	-	Wage & Salary Income Tax
-	-	-	-	Capital Gains Tax
-	-	-	-	Others
1,344.6	12.1	1,629.7	13.5	1.2 Corporate
923.5	8.3	1,126.7	9.3	Corporation Tax
377.0	3.4	447.5	3.7	Defense Tax on Corp. Tax
44.1	0.4	55.5	0.5	Education Tax on Banking & Insurance Business
-	-	-	-	1.3 Other Unalloc. Income Tax
-	-	-	-	Excess Profits Tax
-	-	-	-	Business Income Tax
-	-	-	-	Real Estate Income Tax
-	-	-	-	Excess Increased Value of Land Tax
157.4	1.4	207.1	1.7	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5.7	0.1	4.3	0.0	2.1 Employees
-	-	-	-	Veterans Relief S/A
-	-	-	-	Nat'l Welfare Pension Fund
-	-	-	-	
5.7	0.1	4.3	0.0	Veterans Relief Fund
-	-	-	-	Pneumoconiosis Fund
151.6	1.4	202.8	1.7	2.2 Employers
147.9	1.3	193.2	1.6	Indus. Worker's Accid. Ins. S/A
3.7	0.0	9.6	0.1	Vocational Training Fund.
-	-	-	-	Nat'l Welfare Pension Fund
-	-	-	-	Pneumoconiosis Fund
-	-	-	-	2.3 Self-Employed or Nonemployed

〈표 1〉의 계속

	1980		1981		1982		198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 고용주급료지급액 및 인력세	-	-	-	-	-	-	-	-
4. 재산세	36.5	0.6	77.2	1.0	104.9	1.2	106.0	1.0
4.1 부동산세	-	-	-	-	-	-	-	-
4.2 순재산세	-	-	-	-	-	-	-	-
4.3 상속및증여세	11.5	0.2	31.6	0.4	42.7	0.5	50.9	0.5
상속세	2.9	0.0	12.0	0.2	17.9	0.2	18.1	0.2
방위세(상속세분)	1.9	0.0	2.4	0.0	3.7	0.0	3.4	0.0
증여세	6.7	0.1	14.2	0.2	17.6	0.2	24.5	0.2
방위세(증여세분)	-	-	3.0	0.0	3.5	0.0	4.9	0.0
4.4 금융및자산거래세	2.6	0.0	5.4	0.1	4.6	0.1	4.8	0.0
등록세	-	-	-	-	-	-	-	-
방위세(등록세분)	-	-	-	-	-	-	-	-
증권거래세	2.6	0.0	5.4	0.1	4.6	0.1	4.8	0.0
4.5 임시재산세	22.4	0.4	40.2	0.5	57.6	0.7	50.3	0.5
자산재평가세	22.4	0.4	40.2	0.5	57.6	0.7	50.3	0.5
4.6 기타	-	-	-	-	-	-	-	-
5. 재화 및 용역세	3,092.6	52.4	3,814.0	51.8	4,395.2	51.5	5,220.7	51.1
5.1 일반소비세	1,471.2	24.9	1,804.8	24.5	2,094.4	24.6	2,559.3	25.1
영업세	-	-	-	-	-	-	-	-
부가가치세	1,471.2	24.9	1,804.8	24.5	2,094.4	24.6	2,559.3	25.1
5.2 선택적재화세	1,028.1	17.4	1,218.0	16.5	1,288.7	15.1	1,516.4	14.9
물품세	-	-	-	-	-	-	-	-
방위세(물품세분)	-	-	-	-	-	-	-	-
주세	297.7	5.0	374.8	5.1	394.7	4.6	441.0	4.3
방위세(주세분)	77.8	1.3	88.9	1.2	95.5	1.1	108.7	1.1
교육세(주세분)	-	-	-	-	27.5	0.3	35.3	0.3
직물류세	-	-	-	-	-	-	-	-
유류세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특별소비세	582.5	9.9	665.2	9.0	664.9	7.8	793.3	7.8
방위세	70.1	1.2	89.1	1.2	106.1	1.2	138.1	1.4
교통세	-	-	-	-	-	-	-	-
교육세(특소세분)	-	-	-	-	-	-	-	-

(단위: 십억원, %)

1984		198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3. Employer's Payroll or Manpower Taxes
97.8	0.9	80.1	0.7	4. Taxes on Property
-		-		4.1 Real Estate
-		-		4.2 Net Wealth
56.3	0.5	56.1	0.5	4.3 Inheritance & Gift Tax
20.0	0.2	17.8	0.1	Inheritance Tax
3.8	0.0	3.9	0.0	Defense Tax on Inher. Tax
27.1	0.2	28.6	0.2	Gift Tax
5.4	0.0	5.8	0.0	Defense Tax on Gift Tax
6.5	0.1	7.3	0.1	4.4 Taxes on Finance & Cap. Transact.
-		-		Registration Tax
-		-		Defense Tax on Regist Tax
6.5	0.1	7.3	0.1	Securities Transact. Tax
35.0	0.3	16.7	0.1	4.5 Nonrecurrent Tax
35.0	0.3	16.7	0.1	Asset Revaluation Tax
-		-		4.6 Other Recurrent Tax
5,629.3	50.8	5,933.6	49.0	5. Taxes on Goods & Services
2,704.3	24.4	2,901.2	24.0	5.1 General Sales, Turnover or V.A.T
-		-		Business Tax
2,704.6	24.4	2,901.2	24.0	Value Added Tax
1,705.3	15.4	1,804.6	14.9	5.2 Selective Excises on Goods
-		-		Commodity Tax
-		-		Depense Tax on Commodity Tax
493.4	4.5	501.2	4.1	Liquor Tax
120.2	1.1	124.6	1.0	Defense Tax on Liquor Tax
39.8	0.4	40.9	0.3	Education Tax on Liquor Tax
-		-		Textile Tax
-		-		Petroleum Tax
-		-		Electricity & Gas Tax
898.1	8.1	980.8	8.1	Special Excise Tax
153.8	1.4	-		Defense Tax on Excise Tax
-		157.1	1.3	Traffic Tax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표 1>의 계속

	1980		1981		1982		198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3 전매익금	510.0	8.6	680.0	9.2	842.8	9.9	938.7	9.2
전매납부금	510.0	8.6	680.0	9.2	760.0	8.9	830.0	8.1
교육세(담배판매분)	-	-	-	-	82.8	1.0	108.7	1.1
5.4 선택적응역세	83.3	1.4	111.2	1.5	169.3	2.0	206.3	2.0
전화세	50.0	0.8	66.7	0.9	101.6	1.2	123.8	1.2
방위세(전화세분)	33.3	0.6	44.5	0.6	67.7	0.8	82.5	0.8
유홍음식세	-	-	-	-	-	-	-	-
방위세(유홍음식세분)	-	-	-	-	-	-	-	-
교통세	-	-	-	-	-	-	-	-
입장세	-	-	-	-	-	-	-	-
방위세	-	-	-	-	-	-	-	-
5.5 재화재산이용, 영업허가세	-	-	-	-	-	-	-	-
5.5.1 영업허가세	-	-	-	-	-	-	-	-
5.5.2 차량세	-	-	-	-	-	-	-	-
5.5.3 기타	-	-	-	-	-	-	-	-
5.6 기타	-	-	-	-	-	-	-	-
6. 국제무역거래세	1,013.6	17.2	1,189.8	16.2	1,316.4	15.4	1,798.4	17.6
6.1 수입세	1,013.6	17.2	1,189.8	16.2	1,316.4	15.4	1,798.4	17.6
6.1.1 관세	1,013.6	17.2	1,189.8	16.2	1,316.4	15.4	1,798.4	17.6
관세	762.3	12.9	880.3	12.0	1,102.6	12.9	1,463.2	14.3
방위세(관세분)	247.5	4.2	299.2	4.1	303.8	3.6	335.2	3.3
특별관세	-	-	-	-	-	-	-	-
교육세	-	-	-	-	-	-	-	-
과년도수입	3.8	0.1	10.3	0.1	-	-	-	-
6.1.2 기타부과금	-	-	-	-	-	-	-	-
톤세	-	-	-	-	-	-	-	-
6.2 수출세	-	-	-	-	-	-	-	-
6.3 수출진매이익세	-	-	-	-	-	-	-	-
6.4 외환거래이용세	-	-	-	-	-	-	-	-
6.5 외환세	-	-	-	-	-	-	-	-
6.6 기타	-	-	-	-	-	-	-	-
7. 기타제세	177.3	3.0	237.3	3.2	246.8	2.9	341.8	3.3
7.1 인두세	-	-	-	-	-	-	-	-
7.2 인지세	33.9	0.6	49.9	0.7	54.2	0.6	64.2	0.6
인지세	33.9	0.6	49.9	0.7	54.2	0.6	64.2	0.6
7.3 기타	143.4	2.4	188.0	2.6	192.6	2.3	277.6	2.7
과년도수입	59.1	1.0	82.6	1.1	56.4	0.7	109.3	1.1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3.1	0.1	1.2	0.0	1.8	0.0	1.5	0.0
방위세(내국세분)	-	-	5.8	0.1	7.0	0.1	11.2	0.1
방위세(지방세분)	64.9	1.1	79.1	1.1	103.6	1.2	130.3	1.3
가산금	16.3	0.3	19.3	0.3	23.8	0.3	25.3	0.2
기타지방양여세	-	-	-	-	-	-	-	-
지방교육양여세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단위: 십억원, %)

1984		198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963.1	8.7	950.2	7.8	5.3 Profits of Fiscal Monopoly
846.0	7.6	829.0	6.8	Transferred from Monopoly Co
117.1	1.1	121.2	1.0	Education Tax on Cigarettes
256.0	2.3	277.6	2.3	5.4 Selective Taxes on Specific Services
154.0	1.4	166.6	1.4	Telephone Tax
102.6	0.9	111.0	0.9	Defense Tax on Telephone Tax
-	-	-	-	Entertainment Tax
-	-	-	-	Defense Tax on Entertainment Tax
-	-	-	-	Travel Tax
-	-	-	-	Admission Tax
-	-	-	-	Defense Tax on Admission Tax
-	-	-	-	5.5 Taxes on Use of Goods, Property Perm to perf. Act.
-	-	-	-	5.5.1 Business and Professional Licenses
-	-	-	-	5.5.2 Motor Vehicle Tax
-	-	-	-	5.5.3 Others
-	-	-	-	5.6 Others
1,921.1	17.3	1,950.2	16.1	6. Taxes on Internat'l Transactions
1,921.1	17.3	1,950.2	16.1	6.1 Import Duties
1,921.1	17.3	1,950.2	16.1	6.1.1 Customs Duties
1,361.8	12.3	1,346.6	11.1	Customs Duties
327.1	3.0	384.1	3.2	Defense Tax on Customs Duties
-	-	-	-	Special Customs Duties
-	-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232.2	2.1	219.5	1.8	Prev. Year Receipts
-	-	-	-	6.1.2 Other Charges
-	-	-	-	Tonnage Tax
-	-	-	-	6.2 Export Duties
-	-	-	-	6.3 Profits of Export or Import Marketing Boards
-	-	-	-	6.4 Exchange Profits
-	-	-	-	6.5 Exchange Tax
-	-	-	-	6.6 Other
404.9	3.7	459.5	3.8	7. Other Tax
-	-	-	-	7.1 Poll Tax
68.9	0.6	75.7	0.6	7.2 Stamp Tax
68.9	0.6	75.7	0.6	Stamp Tax
336.0	3.0	383.8	3.2	7.3 Others
170.4	1.5	192.9	1.6	Previous Year Receipts
-	-	3.8	0.0	Prev. Year of Defense Tax of(Local Gov't Taxes)
-	-	9.8	0.1	Defense Tax of Internal Taxes
145.5	1.3	155.6	1.3	Defense Tax of Local Gov't Taxes
20.1	0.2	21.7	0.2	Penalties to Delinquency
-	-	-	-	Local Gov't Taxes
-	-	-	-	Education Tax of Local Gov't Taxes
-	-	-	-	Rural Development Taxes

〈표 1〉의 계속

	1986		1987		198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세수입	13,882.2	100.0	16,689.7	100.0	20,389.4	100.0
1. 소득 및 이익세	3,967.6	28.6	5,295.4	31.7	6,844.1	33.6
1.1 개인	2,236.4	16.1	2,856.8	17.1	3,681.3	18.1
종합소득세	1,784.6	12.9	2,321.0	13.9	2,964.1	14.5
동방위세	315.0	2.3	373.7	2.2	515.4	2.5
교육세(이자배당분)	136.8	1.0	162.1	1.0	201.8	1.0
소득세 ¹⁾	-	-	-	-	-	-
동방위세	-	-	-	-	-	-
배당및이자소득세	-	-	-	-	-	-
근로소득세	-	-	-	-	-	-
양도소득세 ²⁾	-	-	-	-	-	-
기타	-	-	-	-	-	-
1.2 법인	1,731.2	12.5	2,438.6	14.6	3,162.8	15.5
법인세	1,191.4	8.6	1,682.4	10.1	2,247.4	11.0
동방위세	474.3	3.4	694.4	4.2	838.7	4.1
교육세(금융보험분)	65.5	0.5	61.8	0.4	76.7	0.4
1.3 기타	-	-	-	-	-	-
부당이득세	-	-	-	-	-	-
사업소득세 ³⁾	-	-	-	-	-	-
부동산소득세 ²⁾	-	-	-	-	-	-
토지초과이득세	-	-	-	-	-	-
2. 사회보장기여금	249.4	1.8	314.1	1.9	863.0	4.2
2.1 피고용자부담금	5.4	0.0	6.7	0.0	266.5	1.3
보훈특별회계	-	-	-	-	-	-
국민연금기금	-	-	-	-	254.4	1.2
사회복지사업기금	-	-	-	-	3.3	0.0
보훈기금	5.4	0.0	6.7	0.0	8.8	0.0
진폐기금	-	-	-	-	-	-
2.2 고용주부담금	244.0	1.8	307.4	1.8	596.5	2.9
화재보험특별회계	231.4	1.7	295.2	1.8	325.0	1.6
직업훈련축진기금	12.6	0.1	12.2	0.1	12.6	0.1
국민연금기금	-	-	-	-	254.4	1.2
진폐기금	-	-	-	-	4.5	0.0
2.3 자영업자및미숙업자	-	-	-	-	-	-

(단위: 십억원, %)

1989		199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2,393.6	100.0	28,362.6	100.0	Tax Revenue
8,863.8	39.6	10,643.5	37.5	1. Taxes on Income, Profit & Capital Gains
4,490.3	20.1	5,986.0	21.1	1.1 Individuals
3,556.9	15.9	4,723.1	16.7	Global Income Tax
690.9	3.1	937.6	3.3	Defense Tax on Global Income Tax
242.6	1.1	325.3	1.1	Education Tax of Interest & Dividends
-	-	-	-	Income Tax
-	-	-	-	Defense Tax on Income Tax
-	-	-	-	Dividends & Interest Income Tax
-	-	-	-	Wage & Salary Income Tax
-	-	-	-	Capital Gains Tax
-	-	-	-	Others
4,373.4	19.5	4,657.5	16.4	1.2 Corporate
3,107.9	13.9	3,226.1	11.4	Corporation Tax
1,177.0	5.3	1,323.4	4.7	Defense Tax on Corp. Tax
88.5	0.4	108.0	0.4	Education Tax on Banking & Insurance Business
-	-	-	-	1.3 Other Unalloc. Income Tax
-	-	-	-	Excess Profits Tax
-	-	-	-	Business Income Tax
-	-	-	-	Real Estate Income Tax
-	-	-	-	Excess Increased Value of Land Tax
1,112.4	5.0	1,450.5	5.1	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347.1	1.5	440.9	1.6	2.1 Employees
-	-	-	-	Veterans Relief S/A
333.7	1.5	429.5	1.5	Nat'l Welfare Pension Fund
3.1	0.0	-	-	
10.3	0.0	11.4	0.0	Veterans Relief Fund
-	-	-	-	Pneumoconiosis Fund
765.3	3.4	1,009.6	3.6	2.2 Employers
410.6	1.8	550.3	1.9	Indus. Worker's Accid. Ins. S/A
16.0	0.1	29.4	0.1	Vocational Training Fund
333.7	1.5	429.5	1.5	Nat'l Welfare Pension Fund
5.0	0.0	-	-	Pneumoconiosis Fund
-	-	-	-	2.3 Self-Employed or Nonemployed

<표 1>의 계속

	1986		1987		198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 고용주급료지급액 및 인력세	-		-		-	
4. 재산세	102.3	0.7	175.6	1.1	413.0	2.0
4.1 부동산세	-		-		-	
4.2 순재산세	-		-		-	
4.3 상속및증여세	77.3	0.6	83.7	0.5	130.3	0.6
상속세	33.4	0.2	32.7	0.2	36.0	0.2
방위세(상속세분)	6.7	0.0	6.6	0.0	6.9	0.0
증여세	30.9	0.2	36.9	0.2	73.2	0.4
방위세(증여세분)	6.3	0.0	7.5	0.0	14.2	0.1
4.4 금융및자산거래세	18.9	0.1	78.4	0.5	250.0	1.2
등록세	-		-		-	
방위세(등록세분)	-		-		-	
증권거래세	18.9	0.1	78.4	0.5	250.0	1.2
4.5 임시재산세	6.1	0.0	13.5	0.1	32.7	0.2
자산재평가세	6.1	0.0	13.5	0.1	32.7	0.2
4.6 기타	-		-		-	
5. 재화 및 용역세	6,708.6	48.3	7,242.9	43.4	8,410.8	41.3
5.1 일반소비세	3,272.2	23.6	3,605.5	21.6	4,205.2	20.6
영업세	-		-		-	
부가가치세	3,272.2	23.6	3,605.5	21.6	4,205.2	20.6
5.2 선택적재화세	2,001.2	14.4	2,154.3	12.9	2,617.3	12.8
물품세	-		-		-	
방위세(물품세분)	-		-		-	
주세	555.8	4.0	581.5	3.5	780.5	3.8
방위세(주세분)	134.2	1.0	141.0	0.8	193.6	0.9
교육세(주세분)	44.7	0.3	46.4	0.3	62.0	0.3
직물류세	-		-		-	
유류세	-		-		-	
전기가스세	-		-		-	
특별소비세	1,085.5	7.8	1,189.7	7.1	1,333.2	6.5
방위세	-		-		-	
교통세	181.0	1.3	195.7	1.2	248.0	1.2
교육세(특소세분)	-		-		-	

(단위: 십억원, %)

1989		199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3. Employer's Payroll or Manpower Taxes
676.7	3.0	673.9	2.4	4. Taxes on Property
-		-		4.1 Real Estate
-		-		4.2 Net Wealth
171.5	0.8	354.6	1.3	4.3 Inheritance & Gift Tax
39.5	0.2	71.0	0.3	Inheritance Tax
8.3	0.0	14.5	0.1	Defense Tax on Inher. Tax
103.5	0.5	224.9	0.8	Gift Tax
20.2	0.1	44.2	0.2	Defense Tax on Gift Tax
415.5	1.9	224.0	0.8	4.4 Taxes on Finance & Cap. Transact.
-		-		Registration Tax
-		-		Defense Tax on Regist Tax
415.5	1.9	224.0	0.8	Securities Transact. Tax
89.7	0.4	95.3	0.3	4.5 Nonrecurrent Tax
89.7	0.4	95.3	0.3	Asset Revaluation Tax
-		-		4.6 Other Recurrent Tax
8,051.7	36.0	10,880.6	38.4	5. Taxes on Goods & Services
5,260.2	23.5	6,964.4	24.6	5.1 General Sales, Turnover or V.A.T
-		-		Business Tax
5,260.2	23.5	6,964.4	24.6	Value Added Tax
2,666.2	11.9	3,602.3	12.7	5.2 Selective Excises on Goods
-		-		Commodity Tax
-		-		Depense Tax on Commodity Tax
893.0	4.0	1,022.4	3.6	Liquor Tax
221.7	1.0	250.5	0.9	Defense Tax on Liquor Tax
71.3	0.3	80.6	0.3	Education Tax on Liquor Tax
-		-		Textile Tax
-		-		Petroleum Tax
-		-		Electricity & Gas Tax
1,257.0	5.6	1,911.8	6.7	Special Excise Tax
-		-		Defense Tax on Excise Tax
223.2	1.0	337.0	1.2	Traffic Tax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표 1>의 계속

	1986		1987		198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3 전매익금	1,109.5	8.0	1,045.2	6.3	1,115.9	5.5
전매납부금	984.0	7.1	904.3	5.4	947.1	4.6
교육세(담배판매분)	125.5	0.9	140.9	0.8	168.8	0.8
5.4 선택적응역세	325.7	2.3	392.9	2.4	472.4	2.3
전화세	195.4	1.4	235.7	1.4	283.4	1.4
방위세(전화세분)	130.3	0.9	157.2	0.9	189.0	0.9
유홍음식세	-	-	-	-	-	-
방위세(유홍음식세분)	-	-	-	-	-	-
교통세	-	-	-	-	-	-
입장세	-	-	-	-	-	-
방위세	-	-	-	-	-	-
5.5 재화재산이용, 영업허가세	-	-	-	-	-	-
5.5.1 영업허가세	-	-	-	-	-	-
5.5.2 차량세	-	-	-	-	-	-
5.5.3 기타	-	-	-	-	-	-
5.6 기타	-	-	-	-	-	-
6. 국제무역거래세	2,349.1	16.9	3,204.8	19.2	3,167.8	15.5
6.1 수입세	2,349.1	16.9	3,204.8	19.2	3,167.8	15.5
6.1.1 관세	2,349.1	16.9	3,204.8	19.2	3,167.8	15.5
관세	1,725.2	12.4	2,383.2	14.3	2,573.6	12.6
방위세(관세분)	406.5	2.9	508.3	3.0	594.2	2.9
특별관세	-	-	-	-	-	-
교육세	-	-	-	-	-	-
과년도수입	217.4	1.6	313.3	1.9	-	-
6.1.2 기타부과금	-	-	-	-	-	-
톤세	-	-	-	-	-	-
6.2 수출세	-	-	-	-	-	-
6.3 수출전매이익세	-	-	-	-	-	-
6.4 외환거래이용세	-	-	-	-	-	-
6.5 외환세	-	-	-	-	-	-
6.6 기타	-	-	-	-	-	-
7. 기타제세	505.2	3.6	456.9	2.7	690.7	3.4
7.1 인두세	-	-	-	-	-	-
7.2 인지세	83.5	0.6	99.8	0.6	120.7	0.6
인지세	83.5	0.6	99.8	0.6	120.7	0.6
7.3 기타	421.7	3.0	357.1	2.1	570.0	2.8
과년도수입	206.2	1.5	89.8	0.5	213.8	1.0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	-	-	-	-	-
방위세(내국세분)	-	-	-	-	-	-
방위세(지방세분)	189.1	1.4	235.4	1.4	311.0	1.5
가산금	26.4	0.2	31.9	0.2	42.2	0.2
기타지방양여세	-	-	-	-	-	-
지방교육양여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단위: 십억원, %)

1989		199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7.3	0.1	-		5.3 Profits of Fiscal Monopoly
1.5	0.0	-		Transferred from Monopoly Co
15.8	0.1	-		Education Tax on Cigarettes
308.0	1.4	313.8	1.1	5.4 Selective Taxes on Specific Services
237.4	1.1	261.5	0.9	Telephone Tax
70.6	0.3	52.3	0.2	Defense Tax on Telephone Tax
-		-		Entertainment Tax
-		-		Defense Tax on Entertainment Tax
-		-		Travel Tax
-		-		Admission Tax
-		-		Defense Tax on Admission Tax
-		-		5.5 Taxes on Use of Goods, Property Perm to perf. Act.
-		-		5.5.1 Business and Professional Licenses
-		-		5.5.2 Motor Vehicle Tax
-		-		5.5.3 Others
-		-		5.6 Others
2,772.0	12.4	3,684.7	13.0	6. Tax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2,772.0	12.4	3,684.7	13.0	6.1 Import Duties
2,772.0	12.4	3,684.7	13.0	6.1.1 Customs Duties
2,117.7	9.5	2,740.4	9.7	Customs Duties
654.4	2.9	919.3	3.2	Defense Tax on Customs Duties
-		-		Special Customs Duties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		25.0	0.1	Prev. Year Receipts
-		-		6.1.2 Other Charges
-		-		Tonnage Tax
-		-		6.2 Export Duties
-		-		6.3 Profits of Export or Import Marketing Boards
-		-		6.4 Exchange Profits
-		-		6.5 Exchange Tax
-		-		6.6 Other
717.0	3.2	1,029.5	3.6	7. Other Tax
-		-		7.1 Poll Tax
162.3	0.7	193.1	0.7	7.2 Stamp Tax
162.3	0.7	193.1	0.7	Stamp Tax
554.7	2.5	836.4	2.9	7.3 Others
85.5	0.4	212.6	0.7	Previous Year Receipts
-		-		Prev. Year of Defense Tax of (Local Gov't Taxes)
-		-		Defense Tax of Internal Taxes
416.8	1.9	551.8	1.9	Defense Tax of Local Gov't Taxes
47.1	0.2	64.7	0.2	Penalties to Delinquency
-		-		Local Gov't Taxes
5.3	0.0	7.4	0.0	Education Tax of Local Gov't Taxes
-		-		Rural Development Taxes

〈표 1〉의 계속

	1991		1992		199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세수입	32,195.5	100.0	37,751.4	100.0	43,547.9	100.0
1. 소득 및 이익세	11,235.2	34.9	14,071.2	37.3	15,647.8	35.9
1.1 개인	6,459.4	20.1	8,008.4	21.2	9,462.9	21.7
종합소득세	6,459.4	20.1	8,008.4	21.2	9,462.9	21.7
동방위세	-	-	-	-	-	-
교육세(이자배당분)	-	-	-	-	-	-
소득세 ¹²⁾	-	-	-	-	-	-
동방위세	-	-	-	-	-	-
배당및이자소득세	-	-	-	-	-	-
근로소득세	-	-	-	-	-	-
양도소득세 ⁹⁾	-	-	-	-	-	-
기타	-	-	-	-	-	-
1.2 법인	4,585.5	14.2	5,941.1	15.7	5,862.3	13.5
법인세	4,585.5	14.2	5,941.1	15.7	5,862.3	13.5
동방위세	-	-	-	-	-	-
교육세(금융보험분)	-	-	-	-	-	-
1.3 기타	190.3	0.6	121.8	0.3	322.6	0.7
부당이득세	95.2	0.3	121.8	0.3	-	-
사업소득세 ²⁾	-	-	-	-	-	-
부동산소득세 ²⁾	-	-	-	-	-	-
토지초과이득세	95.1	0.3	-	-	322.6	0.7
2. 사회보장기여금	1,798.3	5.6	2,417.1	6.4	4,149.6	9.5
2.1 피고용자부담금	516.5	1.6	634.8	1.7	1,394.1	3.2
보훈특별회계	-	-	-	-	-	-
국민연금기금	500.7	1.6	-	-	-	-
사회복지사업기금	-	-	-	-	-	-
보훈기금	15.8	0.0	-	-	-	-
진폐기금	-	-	-	-	-	-
2.2 고용주부담금	1,281.8	4.0	1,782.3	4.7	2,755.5	6.3
화재보험특별회계	720.9	2.2	-	-	-	-
직업훈련촉진기금	60.2	0.2	-	-	-	-
국민연금기금	500.7	1.6	-	-	-	-
진폐기금	-	-	-	-	-	-
2.3 자영업자및미숙업자	-	-	-	-	-	-

(단위: 십억원, %)

1994		19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1,836.8	100.0	62,209.8	100.0	Tax Revenue
18,651.4	36.0	22,308.8	35.9	1. Taxes on Income, Profit & Capital Gains
11,207.7	21.6	13,618.2	21.9	1.1 Individuals
11,207.7	21.6	13,618.2	21.9	Global Income Tax
-	-	-	-	Defense Tax on Global Income Tax
-	-	-	-	Education Tax of Interest & Dividends
-	-	-	-	Income Tax
-	-	-	-	Defense Tax on Income Tax
-	-	-	-	Dividends & Interest Income Tax
-	-	-	-	Wage & Salary Income Tax
-	-	-	-	Capital Gains Tax
-	-	-	-	Others
7,387.6	14.3	8,662.6	13.9	1.2 Corporate
7,387.6	14.3	8,662.6	13.9	Corporation Tax
-	-	-	-	Defense Tax on Corp. Tax
-	-	-	-	Education Tax on Banking & Insurance Business
56.1	0.1	28.0	0.0	1.3 Other Unalloc. Income Tax
-	-	-	-	Excess Profits Tax
-	-	-	-	Business Income Tax
-	-	-	-	Real Estate Income Tax
56.1	0.1	28.0	0.0	Excess Increased Value of Land Tax
4,575.1	8.8	5,435.3	8.7	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1,694.6	3.3	2,159.8	3.5	2.1 Employees
-	-	-	-	Veterans Relief S/A
-	-	-	-	Nat'l Welfare Pension Fund
-	-	-	-	
-	-	-	-	Veterans Relief Fund
-	-	-	-	Pneumoconiosis Fund
2,880.5	5.6	3,275.5	5.3	2.2 Employers
-	-	-	-	Indus. Worker's Accid. Ins. S/A
-	-	-	-	Vocational Training Fund
-	-	-	-	Nat'l Welfare Pension Fund
-	-	-	-	Pneumoconiosis Fund
-	-	-	-	2.3 Self-Employed or Nonemployed

<표 1>의 계속

	1991		1992		199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 고용주급료지급액 및 인력세	-	-	-	-	-	-
4. 재산세	521.4	1.6	668.0	1.8	1,072.6	2.5
4.1 부동산세	-	-	-	-	-	-
4.2 순재산세	-	-	-	-	-	-
4.3 상속및증여세	326.2	1.0	433.3	1.1	667.2	1.5
상속세	104.4	0.3	175.0	0.5	346.4	0.8
방위세(상속세분)	-	-	-	-	-	-
증여세	221.8	0.7	258.3	0.7	320.8	0.7
방위세(증여세분)	-	-	-	-	-	-
4.4 금융및자산거래세	129.3	0.4	165.8	0.4	306.9	0.7
등록세	-	-	-	-	-	-
방위세(등록세분)	-	-	-	-	-	-
증권거래세	129.3	0.4	165.8	0.4	306.9	0.7
4.5 임시재산세	65.9	0.2	68.9	0.2	98.5	0.2
자산재평가세	65.9	0.2	68.9	0.2	98.5	0.2
4.6 기타	-	-	-	-	-	-
5. 재화 및 용역세	11,955.9	37.1	14,834.4	39.3	17,061.7	39.2
5.1 일반소비세	8,252.6	25.6	10,076.3	26.7	11,687.5	26.8
영업세	-	-	-	-	-	-
부가가치세	8,252.6	25.6	10,076.3	26.7	11,687.5	26.8
5.2 선택적재화세	3,391.9	10.5	4,397.7	11.6	4,974.5	11.4
물품세	-	-	-	-	-	-
방위세(물품세분)	-	-	-	-	-	-
주세	1,145.4	3.6	1,329.1	3.5	1,367.6	3.1
방위세(주세분)	-	-	-	-	-	-
교육세(주세분)	-	-	-	-	-	-
직물류세	-	-	-	-	-	-
유류세	-	-	-	-	-	-
전기가스세	-	-	-	-	-	-
특별소비세	2,246.5	7.0	3,068.6	8.1	3,606.9	8.3
방위세	-	-	-	-	-	-
교통세	-	-	-	-	-	-
교육세(특소세분)	-	-	-	-	-	-

(단위: 십억원, %)

1994		19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3. Employer's Payroll or Manpower Taxes
1,677.8	3.2	1,621.1	2.6	4. Taxes on Property
-		-		4.1 Real Estate
-		-		4.2 Net Wealth
907.4	1.8	1,029.4	1.7	4.3 Inheritance & Gift Tax
523.6	1.0	605.6	1.0	Inheritance Tax
-		423.7	0.7	Defense Tax on Inher. Tax
383.8	0.7	-		Gift Tax
-		-		Defense Tax on Gift Tax
684.0	1.3	502.6	0.8	4.4 Taxes on Finance & Cap. Transact.
-		-		Registration Tax
-		-		Defense Tax on Regist Tax
684.0	1.3	502.6	0.8	Securities Transact. Tax
86.4	0.2	89.1	0.1	4.5 Nonrecurrent Tax
86.4	0.2	89.1	0.1	Asset Revaluation Tax
-		-		4.6 Other Recurrent Tax
19,965.2	38.5	22,993.3	37.0	5. Taxes on Goods & Services
13,058.0	25.2	14,636.9	23.5	5.1 General Sales, Turnover or V.A.T
-		-		Business Tax
13,058.0	25.2	14,636.9	23.5	Value Added Tax
6,448.5	12.4	7,813.4	12.6	5.2 Selective Excises on Goods
-		-		Commodity Tax
-		-		Defense Tax on Commodity Tax
1,545.8	3.0	1,824.5	2.9	Liquor Tax
-		-		Defense Tax on Liquor Tax
-		-		Education Tax on Liquor Tax
-		-		Textile Tax
-		-		Petroleum Tax
-		-		Electricity & Gas Tax
2,445.6	4.7	2,617.1	4.2	Special Excise Tax
-		-		Defense Tax on Excise Tax
2,457.1	4.7	3,371.8	5.4	Traffic Tax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표 1>의 계속

	1991		1992		199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3 전매익금	-		-		-	
전매납부금	-		-		-	
교육세(담배판매분)	-		-		-	
5.4 선택적응역세	311.4	1.0	360.4	1.0	399.7	0.9
전화세	311.4	1.0	361.4	1.0	399.7	0.9
방위세(전화세분)	-		-		-	
유홍음식세	-		-		-	
방위세(유홍음식세분)	-		-		-	
교통세	-		-		-	
입장세	-		-		-	
방위세	-		-		-	
5.5 재화재산이용, 영업허가세	-		-		-	
5.5.1 영업허가세	-		-		-	
5.5.2 차량세	-		-		-	
5.5.3 기타	-		-		-	
5.6 기타	-		-		-	
6. 국제무역거래세	3,294.0	10.2	3,128.5	8.3	2,885.2	6.6
6.1 수입세	3,294.0	10.2	3,128.5	8.3	2,883.9	6.6
6.1.1 관세	3,294.0	10.2	3,118.8	8.3	2,883.9	6.6
관세	3,398.2	10.6	3,118.8	8.3	2,885.9	6.6
방위세(관세분)	△141.5	0.4	△24.7	0.1	△2.0	0.0
특별관세	-		-		-	
교육세	-		-		-	
과년도수입	37.3	0.1	34.4	0.1	-	
6.1.2 기타부과금	-		-		-	
톤세	-		-		-	
6.2 수출세	-		-		-	
6.3 수출전매이익세	-		-		-	
6.4 외환거래이용세	-		-		-	
6.5 외환세	-		-		-	
6.6 기타	-		-		-	
7. 기타제세	3,390.7	10.5	2,632.3	7.0	2,730.9	6.3
7.1 인두세	-		-		-	
7.2 인지세	224.2	0.7	215.0	0.6	242.6	0.6
인지세	224.2	0.7	215.0	0.6	242.6	0.6
7.3 기타	3,166.5	9.8	2,417.3	6.4	2,488.3	5.7
과년도수입	146.8	0.5	291.5	0.8	149.8	0.3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		-		-	
방위세(내국세분)	5.7	0.0	-		123.2	0.3
방위세(지방세분)	1,404.5	4.4	2,009.9	5.3	-	
가산금	82.6	0.3	115.9	0.3	136.4	0.3
기타지방양여세	-		-		-	
지방교육양여세	1,526.9	4.7	-		2,078.9	4.8
농어촌특별세	-		-		-	

(단위: 십억원, %)

1994		19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	-	5.3 Profits of Fiscal Monopoly
-	-	-	-	Transferred from Monopoly Co
-	-	-	-	Education Tax on Cigarettes
458.7	0.9	543.1	0.9	5.4 Selective Taxes on Specific Services
458.7	0.9	543.1	0.9	Telephone Tax
-	-	-	-	Defense Tax on Telephone Tax
-	-	-	-	Entertainment Tax
-	-	-	-	Defense Tax on Entertainment Tax
-	-	-	-	Travel Tax
-	-	-	-	Admission Tax
-	-	-	-	Defense Tax on Admission Tax
-	-	-	-	5.5 Taxes on Use of Goods, Property Perm to perf. Act.
-	-	-	-	5.5.1 Business and Professional Licenses
-	-	-	-	5.5.2 Motor Vehicle Tax
-	-	-	-	5.5.3 Others
-	-	-	-	5.6 Others
3,452.8	6.7	4,633.2	7.4	6. Taxes on Internal Transactions
3,452.8	6.7	4,633.2	7.4	6.1 Import Duties
3,452.8	6.7	4,633.2	7.4	6.1.1 Customs Duties
3,448.9	6.7	4,633.2	7.4	Customs Duties
3.9	0.0	-	-	Defense Tax on Customs Duties
-	-	-	-	Special Customs Duties
-	-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	-	-	-	Prev. Year Receipts
-	-	-	-	6.1.2 Other Charges
-	-	-	-	Tonnage Tax
-	-	-	-	6.2 Export Duties
-	-	-	-	6.3 Profits of Export or Import Marketing Boards
-	-	-	-	6.4 Exchange Profits
-	-	-	-	6.5 Exchange Tax
-	-	-	-	6.6 Other
3,514.5	6.8	5,218.1	8.4	7. Other Tax
-	-	-	-	7.1 Poll Tax
275.3	0.5	319.8	0.5	7.2 Stamp Tax
275.3	0.5	-	-	Stamp Tax
3,239.2	6.2	4,898.3	7.9	7.3 Others
336.4	0.6	508.7	0.8	Previous Year Receipts
-	-	-	-	Prev. Year of Defense Tax of (Local Gov' t Taxes)
72.8	0.1	63.1	0.1	Defense Tax of Internal Taxes
-	-	-	-	Defense Tax of Local Gov' t Taxes
-	-	-	-	Penalties to Delinquency
-	-	2.0	0.0	Local Gov' t Taxes
2,539.6	4.9	2,993.1	4.8	Education Tax of Local Gov' t Taxes
290.4	0.6	1,331.3	2.1	Rural Development Taxes

〈표 1〉의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1997		199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세수입	72,835.6	100.0	78,433.8	100.0	78,310.0	100.0	Tax Revenue
1. 소득 및 이익세	24,136.7	33.1	24,291.7	31.0	27,974.9	35.7	1. Taxes on Income, Profit & Capital Gains
1.1 개인	14,766.9	20.3	14,867.9	19.0	17,194.0	22.0	1.1 Individuals
종합소득세	14,766.9	20.3	14,867.9	19.0	17,194.0	22.0	Global Income Tax
동방위세	-	-	-	-	-	-	Defense Tax on Global Income Tax
교육세(이자배당분)	-	-	-	-	-	-	Education Tax of Interest & Dividends
소득세 ¹⁾²⁾	-	-	-	-	-	-	Income Tax
동방위세	-	-	-	-	-	-	Defense Tax on Income Tax
배당및이자소득세	-	-	-	-	-	-	Dividends & Interest Income Tax
근로소득세	-	-	-	-	-	-	Wage & Salary Income Tax
양도소득세 ³⁾	-	-	-	-	-	-	Capital Gains Tax
기타	-	-	-	-	-	-	Others
1.2 법인	9,356.1	12.8	9,424.7	12.0	10,775.8	13.8	1.2 Corporate
법인세	9,356.1	12.8	9,424.7	12.0	10,775.8	13.8	Corporation Tax
동방위세	-	-	-	-	-	-	Defense Tax on Corp. Tax
교육세(금융보험분)	-	-	-	-	-	-	Education Tax on Banking & Insurance Business
1.3 기타	13.7	0.0	-0.8	0.0	5.1	0.0	1.3 Other Unalloc. Income Tax
부당이익세	-	-	-	-	-	-	Excess Profits Tax
사업소득세 ²⁾	-	-	-	-	-	-	Business Income Tax
부동산소득세 ²⁾	-	-	-	-	-	-	Real Estate Income Tax
토지초과이익세	13.7	0.0	-0.8	0.0	5.1	0.0	Excess Increased Value of Land Tax
2. 사회보장기여금	7,425.4	10.2	8,506.2	10.8	10,512.2	13.4	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2.1 피고용자부담금	2,804.6	3.9	4,177.9	5.3	4,326.6	5.5	2.1 Employees
보훈특별회계	-	-	-	-	-	-	Veterans Relief S/A
국민연금기금	-	-	-	-	-	-	Nat'l Welfare Pension Fund
사회복지사업기금	-	-	-	-	-	-	
보훈기금	-	-	-	-	-	-	Veterans Relief Fund
진폐기금	-	-	-	-	-	-	Pneumoconiosis Fund
2.2 고용주부담금	4,620.8	6.3	4,328.3	5.5	6,185.7	7.9	2.2 Employers
화재보험특별회계	-	-	-	-	-	-	Indus. Worker's Accid. Ins. S/A
직업훈련촉진기금	-	-	-	-	-	-	Vocational Training Fund.
국민연금기금	-	-	-	-	-	-	Nat'l Welfare Pension Fund
진폐기금	-	-	-	-	-	-	Pneumoconiosis Fund
2.3 자영업자및미숙업자	-	-	-	-	-	-	2.3 Self-Employed or Nonemployed

〈표 1〉의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1997		199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 고용주급료지급액 및 인력세	-		-		-		3. Employer's Payroll or Manpower Taxes
4. 재산세	1,472.8	2.0	1,590.2	2.0	1,379.3	1.8	4. Taxes on Property
4.1 부동산세	-		-		-		4.1 Real Estate
4.2 순재산세	-		-		-		4.2 Net Wealth
4.3 상속및증여세	966.5	1.3	1,161.1	1.5	679.6	0.9	4.3 Inheritance & Gift Tax
상속세	565.8	0.8	604.6	0.8	309.5	0.4	Inheritance Tax
방위세(상속세분)	-		-		-		Defense Tax on Inher. Tax
증여세	400.7	0.6	556.5	0.7	370.1	0.5	Gift Tax
방위세(증여세분)	-		-		-		Defense Tax on Gift Tax
4.4 금융및자산거래세	289.6	0.4	261.9	0.3	242.5	0.3	4.4 Taxes on Finance & Cap. Transact.
등록세	-		-		-		Registration Tax
방위세(등록세분)	-		-		-		Defense Tax on Regist Tax
증권거래세	289.6	0.4	261.9	0.3	242.5	0.3	Securities Transact. Tax
4.5 임시재산세	216.7	0.3	167.2	0.2	457.2	0.6	4.5 Nonrecurrent Tax
자산재평가세	216.7	0.3	167.2	0.2	457.2	0.6	Asset Revaluation Tax
4.6 기타	-		-		-		4.6 Other Recurrent Tax
5. 재화 및 용역세	27,477.6	37.7	30,649.9	39.1	27,158.6	34.7	5. Taxes on Goods & Services
5.1 일반소비세	16,789.5	23.1	19,488.0	24.8	15,706.8	20.1	5.1 General Sales, Turnover or V.A.T
영업세	-		-		-		Business Tax
부가가치세	16,789.5	23.1	19,488.0	24.8	15,706.8	20.1	Value Added Tax
5.2 선택적재화세	10,027.1	13.8	10,373.3	13.2	10,529.9	13.4	5.2 Selective Excises on Goods
물품세	-		-		-		Commodity Tax
방위세(물품세분)	-		-		-		Depense Tax on Commodity Tax
주세	2,083.9	2.9	1,789.8	2.3	1,814.5	2.3	Liquor Tax
방위세(주세분)	-		-		-		Defense Tax on Liquor Tax
교육세(주세분)	-		-		-		Education Tax on Liquor Tax
직물류세	-		-		-		Textile Tax
유류세	-		-		-		Petroleum Tax
전기가스세	-		-		-		Electricity & Gas Tax
특별소비세	3,119.3	4.3	3,036.4	3.9	2,211.5	2.8	Special Excise Tax
방위세	-		-		-		Defense Tax on Excise Tax
교통세	4,823.9	6.6	5,547.1	7.1	6,503.9	8.3	Traffic Tax
교육세(특소세분)	-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표 1>의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1997		199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3 전매익금	-	-	-	-	-	-	5.3 Profits of Fiscal Monopoly
전매납부금	-	-	-	-	-	-	Transferred from Monopoly Co
교육세(담배판매분)	-	-	-	-	-	-	Education Tax on Cigarettes
5.4 선택적응역세	661.0	0.9	788.6	1.0	921.9	1.2	5.4 Selective Taxes on Specific Services
전화세	661.0	0.9	788.6	1.0	921.9	1.2	Telephone Tax
방위세(전화세분)	-	-	-	-	-	-	Defense Tax on Telephone Tax
유흥음식세	-	-	-	-	-	-	Entertainment Tax
방위세(유흥음식세분)	-	-	-	-	-	-	Defense Tax on Entertainment Tax
교통세	-	-	-	-	-	-	Travel Tax
입장세	-	-	-	-	-	-	Admission Tax
방위세	-	-	-	-	-	-	Defense Tax on Admission Tax
5.5 재화재산이용, 영업허가세	-	-	-	-	-	-	5.5 Taxes on Use of Goods, Property Perm to perf. Act.
5.5.1 영업허가세	-	-	-	-	-	-	5.5.1 Business and Professional Licenses
5.5.2 차량세	-	-	-	-	-	-	5.5.2 Motor Vehicle Tax
5.5.3 기타	-	-	-	-	-	-	5.5.3 Others
5.6 기타	-	-	-	-	-	-	5.6 Others
6. 국제무역거래세	5,309.5	7.3	5,797.6	7.4	3,836.0	4.9	6. Taxes on Internat' l Transactions
6.1 수입세	5,309.5	7.3	5,797.6	7.4	3,836.0	4.9	6.1 Import Duties
6.1.1 관세	5,309.5	7.3	5,797.6	7.4	3,836.0	4.9	6.1.1 Customs Duties
관세	5,309.5	7.3	5,797.6	7.4	3,836.0	4.9	Customs Duties
방위세(관세분)	-	-	-	-	-	-	Defense Tax on Customs Duties
특별관세	-	-	-	-	-	-	Special Customs Duties
교육세	-	-	-	-	-	-	Education Tax on Excise Tax
과년도수입	-	-	-	-	-	-	Prev. Year Receipts
6.1.2 기타부과금	-	-	-	-	-	-	6.1.2 Other Charges
톤세	-	-	-	-	-	-	Tonnage Tax
6.2 수출세	-	-	-	-	-	-	6.2 Export Duties
6.3 수출전매이익세	-	-	-	-	-	-	6.3 Profits of Export or Import Marketing Boards
6.4 외환거래이용세	-	-	-	-	-	-	6.4 Exchange Profits
6.5 외환세	-	-	-	-	-	-	6.5 Exchange Tax
6.6 기타	-	-	-	-	-	-	6.6 Other
7. 기타제세	6,563.7	9.0	7,598.1	9.7	7,448.9	9.5	7. Other Tax
7.1 인두세	-	-	-	-	-	-	7.1 Poll Tax
7.2 인지세	356.0	0.5	390.1	0.5	303.5	0.4	7.2 Stamp Tax
인지세	356.0	0.5	390.1	0.5	303.5	0.4	Stamp Tax
7.3 기타	6,207.7	8.5	7,208.0	9.2	7,145.4	9.1	7.3 Others
과년도수입	626.2	0.9	778.2	1.0	925.4	1.2	Previous Year Receipts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	-	-	-	-	-	Prev. Year of Defense Tax of(Local Gov' t Taxes)
방위세(내국세분)	14.3	0.0	-8.5	0.0	1.4	0.0	Defense Tax of Internal Taxes
방위세(지방세분)	-	-	-	-	-	-	Defense Tax of Local Gov' t Taxes
가산금	-	-	-	-	-	-	Penalties to Delinquency
기타지방양여세	-	-	-	-	-	-	Local Gov' t Taxes
지방교육양여세	4,081.3	5.6	5,398.5	6.9	5,203.1	6.6	Education Tax of Local Gov' t Taxes
농어촌특별세	1,486.0	2.0	1,039.8	1.3	1,015.4	1.3	Rural Development Taxes

주: 1) 현행 종합소득세제 실행이전의 세목, 2) 현행 종합소득세제 실행이전의 부분적 종합소득세
3) 부동산투기억제세 포함

자료: 재정경제원, 『한국통합재정수지』.